청라 아크원 푸르지오(APT)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인천광역시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10.22.(목)	2026.11.02.(월)	2026.11.03.(화)	2026.11.04.(수)	2026.11.10.(화)	2026.11.12.(목) ~2026.11.16.(월) (주말포함, 5일간)	2026.11.22.(일) ~2026.11.24.(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arkone-prugio.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 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 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특별공급/1·2순위)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22.(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공급세대수의 50%를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11.02.(월)	2026.11.03.(화)	2026.11.04.(수)	2026.11.10.(화)	2026.11.12.(목) ~2026.11.16.(월) (주말포함, 5일간)	2026.11.22.(일) ~2026.11.24.(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견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7-1) ■ 접수 방법, 일정 및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 할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인천광역시 서해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

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1.10.)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2026.06.1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22188 (2026.10.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6-1번지 (청라국제업무단지 M5BL)

■ **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중심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제자유구역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5층 ~ 지상 44층, 3개동, 총 868세대 중 일반분양 868세대
[특별공급 514세대(기관추천 60세대, 경제자유구역 86세대, 다자녀가구 84세대, 신혼부부 93세대, 노부모부양 26세대, 생애최초 105세대, 신생아 6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31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경제 자유 구역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496	01	084.9443A	84A	84.9443	37.2676	122.2119	67.0610	189.2729	15.6681	248	19	26	24	42	8	45	26	190	58	6
	02	084.9210B	84B	84.9210	36.7429	121.6639	67.0427	188.7066	15.6638	124	13	11	12	14	4	18	12	84	40	3
	03	084.8592C	84C	84.8592	35.4322	120.2914	66.9939	187.2853	15.6524	124	15	13	12	20	4	22	12	98	26	3
	04	084.9540D	84D	84.9540	36.9529	121.9069	67.0687	188.9756	15.6699	124	13	12	12	17	4	20	10	88	36	3
	05	103.8518A	103A	103.8518	43.1930	147.0448	81.9881	229.0329	19.1556	124	-	13	12	-	4	-	-	29	95	3
	06	103.9916B	103B	103.9916	44.2084	148.2000	82.0984	230.2984	19.1814	124	-	11	12	-	2	-	-	25	99	3
	합 계									868	60	86	84	93	26	105	60	514	354	21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868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이며,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택공급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측량 시 사업필지의 소수점 이하 대지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공급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당 사업지의 주택사업계획변경 또는 사용검사 시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필지의 대지면적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 및 분양 홍보물의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9443A	084.9210B	084.8592C	084.9540D	103.8518A	103.9916B
약식 표기	84A	84B	84C	84D	103A	103B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타입)	동/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계약 시	2차 30일 이내	1차(10%) 2027.06.15.	2차(10%) 2028.04.14.	3차(10%) 2029.02.15.	4차(10%) 2030.02.15.	5차(10%) 2030.06.14.	6차(10%) 2030.12.13.	입주지정일
84A	201동 3호	2층	1	420,055,700	458,044,300	-	878,100,000	10,000,000	33,905,000	87,810,000	87,810,000	87,810,000	87,810,000	87,810,000	87,810,000	307,335,000
	201,202,203동 3호	3층	3	420,055,700	458,944,300	-	879,000,000	10,000,000	33,95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307,650,000
		4층	3	420,055,700	459,844,300	-	879,900,000	10,000,000	33,995,000	87,990,000	87,990,000	87,990,000	87,990,000	87,990,000	87,990,000	307,965,000
		5층	3	420,055,700	460,644,300	-	880,700,000	10,000,000	34,035,000	88,070,000	88,070,000	88,070,000	88,070,000	88,070,000	88,070,000	308,245,000
		6층	3	420,055,700	461,544,300	-	881,600,000	10,000,000	34,080,000	88,160,000	88,160,000	88,160,000	88,160,000	88,160,000	88,160,000	308,560,000
		7층	3	420,055,700	462,444,300	-	882,500,000	10,000,000	34,125,000	88,250,000	88,250,000	88,250,000	88,250,000	88,250,000	88,250,000	308,875,000
		8층	3	420,055,700	463,344,300	-	883,400,000	10,000,000	34,170,000	88,340,000	88,340,000	88,340,000	88,340,000	88,340,000	88,340,000	309,190,000
		9층	3	420,055,700	464,244,300	-	884,300,000	10,000,000	34,215,000	88,430,000	88,430,000	88,430,000	88,430,000	88,430,000	88,430,000	309,505,000
		10층	3	420,055,700	465,144,300	-	885,200,000	10,000,000	34,260,000	88,520,000	88,520,000	88,520,000	88,520,000	88,520,000	88,520,000	309,820,000
		11층	3	420,055,700	465,544,300	-	885,600,000	10,000,000	34,280,000	88,560,000	88,560,000	88,560,000	88,560,000	88,560,000	88,560,000	309,960,000
		12층	3	420,055,700	466,044,300	-	886,100,000	10,000,000	34,305,000	88,610,000	88,610,000	88,610,000	88,610,000	88,610,000	88,610,000	310,135,000
		13층	3	420,055,700	466,444,300	-	886,500,000	10,000,000	34,325,000	88,650,000	88,650,000	88,650,000	88,650,000	88,650,000	88,650,000	310,275,000
		14층	3	420,055,700	466,944,300	-	887,000,000	10,000,000	34,35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310,450,000
		15층	3	420,055,700	467,344,300	-	887,400,000	10,000,000	34,37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310,590,000
		16층	3	420,055,700	468,244,300	-	888,300,000	10,000,000	34,415,000	88,830,000	88,830,000	88,830,000	88,830,000	88,830,000	88,830,000	310,905,000
		17층	3	420,055,700	469,144,300	-	889,200,000	10,000,000	34,460,000	88,920,000	88,920,000	88,920,000	88,920,000	88,920,000	88,920,000	311,220,000
		18층	3	420,055,700	470,044,300	-	890,100,000	10,000,000	34,505,000	89,010,000	89,010,000	89,010,000	89,010,000	89,010,000	89,010,000	311,535,000
	201동 3호	19층	1	420,055,700	470,844,300	-	890,900,000	10,000,000	34,545,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311,815,000
	202,203동 3호	20층	2	420,055,700	471,744,300	-	891,800,000	10,000,000	34,590,000	89,180,000	89,180,000	89,180,000	89,180,000	89,180,000	89,180,000	312,130,000
	201,202,203동 3호	21층	3	420,055,700	472,644,300	-	892,700,000	10,000,000	34,635,000	89,270,000	89,270,000	89,270,000	89,270,000	89,270,000	89,270,000	312,445,000

		22층	3	420,055,700	473,544,300	-	893,600,000	10,000,000	34,680,000	89,360,000	89,360,000	89,360,000	89,360,000	89,360,000	89,360,000	312,760,000
		23층	3	420,055,700	474,444,300	-	894,500,000	10,000,000	34,725,000	89,450,000	89,450,000	89,450,000	89,450,000	89,450,000	89,450,000	313,075,000
		24층	3	420,055,700	475,344,300	-	895,400,000	10,000,000	34,770,000	89,540,000	89,540,000	89,540,000	89,540,000	89,540,000	89,540,000	313,390,000
		25층	3	420,055,700	477,144,300	-	897,200,000	10,000,000	34,860,000	89,720,000	89,720,000	89,720,000	89,720,000	89,720,000	89,720,000	314,020,000
		26층	3	420,055,700	478,844,300	-	898,900,000	10,000,000	34,945,000	89,890,000	89,890,000	89,890,000	89,890,000	89,890,000	89,890,000	314,615,000
		27층	3	420,055,700	480,644,300	-	900,700,000	10,000,000	35,035,000	90,070,000	90,070,000	90,070,000	90,070,000	90,070,000	90,070,000	315,245,000
		28층	3	420,055,700	482,444,300	-	902,500,000	10,000,000	35,125,000	90,250,000	90,250,000	90,250,000	90,250,000	90,250,000	90,250,000	315,875,000
		29층	3	420,055,700	484,244,300	-	904,300,000	10,000,000	35,215,000	90,430,000	90,430,000	90,430,000	90,430,000	90,430,000	90,430,000	316,505,000
		30층	3	420,055,700	485,944,300	-	906,000,000	10,000,000	35,300,000	90,600,000	90,600,000	90,600,000	90,600,000	90,600,000	90,600,000	317,100,000
		31층	3	420,055,700	487,744,300	-	907,800,000	10,000,000	35,390,000	90,780,000	90,780,000	90,780,000	90,780,000	90,780,000	90,780,000	317,730,000
		32층	3	420,055,700	489,544,300	-	909,600,000	10,000,000	35,480,000	90,960,000	90,960,000	90,960,000	90,960,000	90,960,000	90,960,000	318,360,000
	201,202,203동 3호	33층	3	420,055,700	491,344,300	-	911,400,000	10,000,000	35,570,000	91,140,000	91,140,000	91,140,000	91,140,000	91,140,000	91,140,000	318,990,000
		34층	3	420,055,700	493,044,300	-	913,100,000	10,000,000	35,655,000	91,310,000	91,310,000	91,310,000	91,310,000	91,310,000	91,310,000	319,585,000
		35층	3	420,055,700	494,844,300	-	914,900,000	10,000,000	35,745,000	91,490,000	91,490,000	91,490,000	91,490,000	91,490,000	91,490,000	320,215,000
		36층	3	420,055,700	495,744,300	-	915,800,000	10,000,000	35,790,000	91,580,000	91,580,000	91,580,000	91,580,000	91,580,000	91,580,000	320,530,000
		37층	3	420,055,700	496,644,300	-	916,700,000	10,000,000	35,835,000	91,670,000	91,670,000	91,670,000	91,670,000	91,670,000	91,670,000	320,845,000
		38층	3	420,055,700	497,544,300	-	917,600,000	10,000,000	35,880,000	91,760,000	91,760,000	91,760,000	91,760,000	91,760,000	91,760,000	321,160,000
84A		39층	3	420,055,700	498,444,300	-	918,500,000	10,000,000	35,925,000	91,850,000	91,850,000	91,850,000	91,850,000	91,850,000	91,850,000	321,475,000
		40층	3	420,055,700	498,844,300	-	918,900,000	10,000,000	35,945,000	91,890,000	91,890,000	91,890,000	91,890,000	91,890,000	91,890,000	321,615,000
		41층	3	420,055,700	499,244,300	-	919,300,000	10,000,000	35,965,000	91,930,000	91,930,000	91,930,000	91,930,000	91,930,000	91,930,000	321,755,000
		42층	3	420,055,700	499,744,300	-	919,800,000	10,000,000	35,990,000	91,980,000	91,980,000	91,980,000	91,980,000	91,980,000	91,980,000	321,930,000
		43층	3	420,055,700	500,144,300	-	920,200,000	10,000,000	36,010,000	92,020,000	92,020,000	92,020,000	92,020,000	92,020,000	92,020,000	322,070,000
		44층	3	420,055,700	500,644,300	-	920,700,000	10,000,000	36,035,000	92,070,000	92,070,000	92,070,000	92,070,000	92,070,000	92,070,000	322,245,000
	201동 5호	2층	1	420,055,700	417,744,300	-	837,800,000	10,000,000	31,890,000	83,780,000	83,780,000	83,780,000	83,780,000	83,780,000	83,780,000	293,230,000
		3층	3	420,055,700	418,544,300	-	838,600,000	10,000,000	31,930,000	83,860,000	83,860,000	83,860,000	83,860,000	83,860,000	83,860,000	293,510,000
		4층	3	420,055,700	419,344,300	-	839,400,000	10,000,000	31,970,000	83,940,000	83,940,000	83,940,000	83,940,000	83,940,000	83,940,000	293,790,000
	201,202,203동 5호	5층	3	420,055,700	420,244,300	-	840,300,000	10,000,000	32,015,000	84,030,000	84,030,000	84,030,000	84,030,000	84,030,000	84,030,000	294,105,000
		6층	3	420,055,700	421,044,300	-	841,100,000	10,000,000	32,055,000	84,110,000	84,110,000	84,110,000	84,110,000	84,110,000	84,110,000	294,385,000
		7층	3	420,055,700	421,944,300	-	842,000,000	10,000,000	32,1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294,700,000

		8층	3	420,055,700	422,744,300	-	842,800,000	10,000,000	32,140,000	84,280,000	84,280,000	84,280,000	84,280,000	84,280,000	84,280,000	294,980,000
		9층	3	420,055,700	423,644,300	-	843,700,000	10,000,000	32,185,000	84,370,000	84,370,000	84,370,000	84,370,000	84,370,000	84,370,000	295,295,000
		10층	3	420,055,700	424,444,300	-	844,500,000	10,000,000	32,225,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295,575,000
		11층	3	420,055,700	424,944,300	-	845,000,000	10,000,000	32,25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295,750,000
		12층	3	420,055,700	425,344,300	-	845,400,000	10,000,000	32,270,000	84,540,000	84,540,000	84,540,000	84,540,000	84,540,000	84,540,000	295,890,000
		13층	3	420,055,700	425,744,300	-	845,800,000	10,000,000	32,290,000	84,580,000	84,580,000	84,580,000	84,580,000	84,580,000	84,580,000	296,030,000
		14층	3	420,055,700	426,144,300	-	846,200,000	10,000,000	32,310,000	84,620,000	84,620,000	84,620,000	84,620,000	84,620,000	84,620,000	296,170,000
		15층	3	420,055,700	426,544,300	-	846,600,000	10,000,000	32,33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296,310,000
		16층	3	420,055,700	427,444,300	-	847,500,000	10,000,000	32,375,000	84,750,000	84,750,000	84,750,000	84,750,000	84,750,000	84,750,000	296,625,000
		17층	3	420,055,700	428,244,300	-	848,300,000	10,000,000	32,415,000	84,830,000	84,830,000	84,830,000	84,830,000	84,830,000	84,830,000	296,905,000
		18층	3	420,055,700	429,144,300	-	849,200,000	10,000,000	32,460,000	84,920,000	84,920,000	84,920,000	84,920,000	84,920,000	84,920,000	297,220,000
	201동 5호	19층	1	420,055,700	429,944,300	-	850,000,000	10,000,000	32,500,000	85,000,000	85,000,000	85,000,000	85,000,000	85,000,000	85,000,000	297,500,000
	202,203동 5호	20층	2	420,055,700	430,844,300	-	850,900,000	10,000,000	32,545,000	85,090,000	85,090,000	85,090,000	85,090,000	85,090,000	85,090,000	297,815,000
		21층	3	420,055,700	431,644,300	-	851,700,000	10,000,000	32,585,000	85,170,000	85,170,000	85,170,000	85,170,000	85,170,000	85,170,000	298,095,000
		22층	3	420,055,700	432,544,300	-	852,600,000	10,000,000	32,630,000	85,260,000	85,260,000	85,260,000	85,260,000	85,260,000	85,260,000	298,410,000
		23층	3	420,055,700	433,344,300	-	853,400,000	10,000,000	32,670,000	85,340,000	85,340,000	85,340,000	85,340,000	85,340,000	85,340,000	298,690,000
		24층	3	420,055,700	434,244,300	-	854,300,000	10,000,000	32,715,000	85,430,000	85,430,000	85,430,000	85,430,000	85,430,000	85,430,000	299,005,000
84A		25층	3	420,055,700	435,944,300	-	856,000,000	10,000,000	32,8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299,600,000
		26층	3	420,055,700	437,644,300	-	857,700,000	10,000,000	32,885,000	85,770,000	85,770,000	85,770,000	85,770,000	85,770,000	85,770,000	300,195,000
		27층	3	420,055,700	439,244,300	-	859,300,000	10,000,000	32,965,000	85,930,000	85,930,000	85,930,000	85,930,000	85,930,000	85,930,000	300,755,000
		28층	3	420,055,700	440,944,300	-	861,000,000	10,000,000	33,05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301,350,000
	201,202,203동 5호	29층	3	420,055,700	442,644,300	-	862,700,000	10,000,000	33,135,000	86,270,000	86,270,000	86,270,000	86,270,000	86,270,000	86,270,000	301,945,000
		30층	3	420,055,700	444,344,300	-	864,400,000	10,000,000	33,220,000	86,440,000	86,440,000	86,440,000	86,440,000	86,440,000	86,440,000	302,540,000
		31층	3	420,055,700	446,044,300	-	866,100,000	10,000,000	33,305,000	86,610,000	86,610,000	86,610,000	86,610,000	86,610,000	86,610,000	303,135,000
		32층	3	420,055,700	447,744,300	-	867,800,000	10,000,000	33,390,000	86,780,000	86,780,000	86,780,000	86,780,000	86,780,000	86,780,000	303,730,000
		33층	3	420,055,700	449,444,300	-	869,500,000	10,000,000	33,475,000	86,950,000	86,950,000	86,950,000	86,950,000	86,950,000	86,950,000	304,325,000
		34층	3	420,055,700	451,144,300	-	871,200,000	10,000,000	33,560,000	87,120,000	87,120,000	87,120,000	87,120,000	87,120,000	87,120,000	304,920,000
		35층	3	420,055,700	452,844,300	-	872,900,000	10,000,000	33,645,000	87,290,000	87,290,000	87,290,000	87,290,000	87,290,000	87,290,000	305,515,000
		36층	3	420,055,700	453,644,300	-	873,700,000	10,000,000	33,685,000	87,370,000	87,370,000	87,370,000	87,370,000	87,370,000	87,370,000	305,795,000

		37층	3	420,055,700	454,544,300	-	874,600,000	10,000,000	33,730,000	87,460,000	87,460,000	87,460,000	87,460,000	87,460,000	87,460,000	306,110,000
		38층	3	420,055,700	455,344,300	-	875,400,000	10,000,000	33,770,000	87,540,000	87,540,000	87,540,000	87,540,000	87,540,000	87,540,000	306,390,000
		39층	3	420,055,700	456,244,300	-	876,300,000	10,000,000	33,815,000	87,630,000	87,630,000	87,630,000	87,630,000	87,630,000	87,630,000	306,705,000
		40층	3	420,055,700	456,644,300	-	876,700,000	10,000,000	33,835,000	87,670,000	87,670,000	87,670,000	87,670,000	87,670,000	87,670,000	306,845,000
		41층	3	420,055,700	457,044,300	-	877,100,000	10,000,000	33,855,000	87,710,000	87,710,000	87,710,000	87,710,000	87,710,000	87,710,000	306,985,000
		42층	3	420,055,700	457,444,300	-	877,500,000	10,000,000	33,875,000	87,750,000	87,750,000	87,750,000	87,750,000	87,750,000	87,750,000	307,125,000
		43층	3	420,055,700	457,944,300	-	878,000,000	10,000,000	33,9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307,300,000
		44층	3	420,055,700	458,344,300	-	878,400,000	10,000,000	33,920,000	87,840,000	87,840,000	87,840,000	87,840,000	87,840,000	87,840,000	307,440,000
84B	201동 4호	2층	1	419,940,500	438,859,500	-	858,800,000	10,000,000	32,940,000	85,880,000	85,880,000	85,880,000	85,880,000	85,880,000	85,880,000	300,580,000
	201,202,203동 4호	3층	3	419,940,500	439,759,500	-	859,700,000	10,000,000	32,985,000	85,970,000	85,970,000	85,970,000	85,970,000	85,970,000	85,970,000	300,895,000
		4층	3	419,940,500	440,559,500	-	860,500,000	10,000,000	33,025,000	86,050,000	86,050,000	86,050,000	86,050,000	86,050,000	86,050,000	301,175,000
		5층	3	419,940,500	441,459,500	-	861,400,000	10,000,000	33,070,000	86,140,000	86,140,000	86,140,000	86,140,000	86,140,000	86,140,000	301,490,000
		6층	3	419,940,500	442,359,500	-	862,300,000	10,000,000	33,115,000	86,230,000	86,230,000	86,230,000	86,230,000	86,230,000	86,230,000	301,805,000
		7층	3	419,940,500	443,159,500	-	863,100,000	10,000,000	33,155,000	86,310,000	86,310,000	86,310,000	86,310,000	86,310,000	86,310,000	302,085,000
		8층	3	419,940,500	444,059,500	-	864,000,000	10,000,000	33,2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302,400,000
		9층	3	419,940,500	444,959,500	-	864,900,000	10,000,000	33,245,000	86,490,000	86,490,000	86,490,000	86,490,000	86,490,000	86,490,000	302,715,000
		10층	3	419,940,500	445,759,500	-	865,700,000	10,000,000	33,285,000	86,570,000	86,570,000	86,570,000	86,570,000	86,570,000	86,570,000	302,995,000
		11층	3	419,940,500	446,259,500	-	866,200,000	10,000,000	33,310,000	86,620,000	86,620,000	86,620,000	86,620,000	86,620,000	86,620,000	303,170,000
		12층	3	419,940,500	446,659,500	-	866,600,000	10,000,000	33,33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303,310,000
		13층	3	419,940,500	447,059,500	-	867,000,000	10,000,000	33,35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303,450,000
		14층	3	419,940,500	447,559,500	-	867,500,000	10,000,000	33,375,000	86,750,000	86,750,000	86,750,000	86,750,000	86,750,000	86,750,000	303,625,000
		15층	3	419,940,500	447,959,500	-	867,900,000	10,000,000	33,395,000	86,790,000	86,790,000	86,790,000	86,790,000	86,790,000	86,790,000	303,765,000
		16층	3	419,940,500	448,859,500	-	868,800,000	10,000,000	33,440,000	86,880,000	86,880,000	86,880,000	86,880,000	86,880,000	86,880,000	304,080,000
		17층	3	419,940,500	449,759,500	-	869,700,000	10,000,000	33,485,000	86,970,000	86,970,000	86,970,000	86,970,000	86,970,000	86,970,000	304,395,000
		18층	3	419,940,500	450,559,500	-	870,500,000	10,000,000	33,525,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304,675,000
	201동 4호	19층	1	419,940,500	451,459,500	-	871,400,000	10,000,000	33,570,000	87,140,000	87,140,000	87,140,000	87,140,000	87,140,000	87,140,000	304,990,000
	202,203동 4호	20층	2	419,940,500	452,359,500	-	872,300,000	10,000,000	33,615,000	87,230,000	87,230,000	87,230,000	87,230,000	87,230,000	87,230,000	305,305,000
	201,202,203동 4호	21층	3	419,940,500	453,159,500	-	873,100,000	10,000,000	33,655,000	87,310,000	87,310,000	87,310,000	87,310,000	87,310,000	87,310,000	305,585,000
		22층	3	419,940,500	454,059,500	-	874,000,000	10,000,000	33,700,000	87,400,000	87,400,000	87,400,000	87,400,000	87,400,000	87,400,000	305,900,000

		23층	3	419,940,500	454,959,500	-	874,900,000	10,000,000	33,745,000	87,490,000	87,490,000	87,490,000	87,490,000	87,490,000	87,490,000	306,215,000
		24층	3	419,940,500	455,759,500	-	875,700,000	10,000,000	33,785,000	87,570,000	87,570,000	87,570,000	87,570,000	87,570,000	87,570,000	306,495,000
		25층	3	419,940,500	457,559,500	-	877,500,000	10,000,000	33,875,000	87,750,000	87,750,000	87,750,000	87,750,000	87,750,000	87,750,000	307,125,000
		26층	3	419,940,500	459,259,500	-	879,200,000	10,000,000	33,96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307,720,000
		27층	3	419,940,500	460,959,500	-	880,900,000	10,000,000	34,045,000	88,090,000	88,090,000	88,090,000	88,090,000	88,090,000	88,090,000	308,315,000
84B	201,202,203동 4호	28층	3	419,940,500	462,759,500	-	882,700,000	10,000,000	34,135,000	88,270,000	88,270,000	88,270,000	88,270,000	88,270,000	88,270,000	308,945,000
		29층	3	419,940,500	464,459,500	-	884,400,000	10,000,000	34,22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309,540,000
		30층	3	419,940,500	466,159,500	-	886,100,000	10,000,000	34,305,000	88,610,000	88,610,000	88,610,000	88,610,000	88,610,000	88,610,000	310,135,000
		31층	3	419,940,500	467,959,500	-	887,900,000	10,000,000	34,395,000	88,790,000	88,790,000	88,790,000	88,790,000	88,790,000	88,790,000	310,765,000
		32층	3	419,940,500	469,659,500	-	889,600,000	10,000,000	34,480,000	88,960,000	88,960,000	88,960,000	88,960,000	88,960,000	88,960,000	311,360,000
		33층	3	419,940,500	471,459,500	-	891,400,000	10,000,000	34,570,000	89,140,000	89,140,000	89,140,000	89,140,000	89,140,000	89,140,000	311,990,000
		34층	3	419,940,500	473,159,500	-	893,100,000	10,000,000	34,655,000	89,310,000	89,310,000	89,310,000	89,310,000	89,310,000	89,310,000	312,585,000
		35층	3	419,940,500	474,859,500	-	894,800,000	10,000,000	34,740,000	89,480,000	89,480,000	89,480,000	89,480,000	89,480,000	89,480,000	313,180,000
		36층	3	419,940,500	475,759,500	-	895,700,000	10,000,000	34,785,000	89,570,000	89,570,000	89,570,000	89,570,000	89,570,000	89,570,000	313,495,000
		37층	3	419,940,500	476,659,500	-	896,600,000	10,000,000	34,830,000	89,660,000	89,660,000	89,660,000	89,660,000	89,660,000	89,660,000	313,810,000
		38층	3	419,940,500	477,459,500	-	897,400,000	10,000,000	34,870,000	89,740,000	89,740,000	89,740,000	89,740,000	89,740,000	89,740,000	314,090,000
		39층	3	419,940,500	478,359,500	-	898,300,000	10,000,000	34,915,000	89,830,000	89,830,000	89,830,000	89,830,000	89,830,000	89,830,000	314,405,000
		40층	3	419,940,500	478,759,500	-	898,700,000	10,000,000	34,935,000	89,870,000	89,870,000	89,870,000	89,870,000	89,870,000	89,870,000	314,545,000
		41층	3	419,940,500	479,259,500	-	899,200,000	10,000,000	34,96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314,720,000
		42층	3	419,940,500	479,659,500	-	899,600,000	10,000,000	34,980,000	89,960,000	89,960,000	89,960,000	89,960,000	89,960,000	89,960,000	314,860,000
		43층	3	419,940,500	480,059,500	-	900,000,000	10,000,000	35,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315,000,000
		44층	3	419,940,500	480,559,500	-	900,500,000	10,000,000	35,025,000	90,050,000	90,050,000	90,050,000	90,050,000	90,050,000	90,050,000	315,175,000
84C	201동 6호	2층	1	419,634,900	447,165,100	-	866,800,000	10,000,000	33,340,000	86,680,000	86,680,000	86,680,000	86,680,000	86,680,000	86,680,000	303,380,000
		3층	1	419,634,900	448,065,100	-	867,700,000	10,000,000	33,385,000	86,770,000	86,770,000	86,770,000	86,770,000	86,770,000	86,770,000	303,695,000
		4층	1	419,634,900	448,865,100	-	868,500,000	10,000,000	33,425,000	86,850,000	86,850,000	86,850,000	86,850,000	86,850,000	86,850,000	303,975,000
		5층	1	419,634,900	449,765,100	-	869,400,000	10,000,000	33,470,000	86,940,000	86,940,000	86,940,000	86,940,000	86,940,000	86,940,000	304,290,000
		6층	1	419,634,900	450,665,100	-	870,300,000	10,000,000	33,515,000	87,030,000	87,030,000	87,030,000	87,030,000	87,030,000	87,030,000	304,605,000
		7층	1	419,634,900	451,565,100	-	871,200,000	10,000,000	33,560,000	87,120,000	87,120,000	87,120,000	87,120,000	87,120,000	87,120,000	304,920,000
		8층	1	419,634,900	452,365,100	-	872,000,000	10,000,000	33,6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305,200,000

		9층	1	419,634,900	453,265,100	-	872,900,000	10,000,000	33,645,000	87,290,000	87,290,000	87,290,000	87,290,000	87,290,000	87,290,000	305,515,000
		10층	1	419,634,900	454,165,100	-	873,800,000	10,000,000	33,690,000	87,380,000	87,380,000	87,380,000	87,380,000	87,380,000	87,380,000	305,830,000
		11층	1	419,634,900	454,565,100	-	874,200,000	10,000,000	33,710,000	87,420,000	87,420,000	87,420,000	87,420,000	87,420,000	87,420,000	305,970,000
		12층	1	419,634,900	455,065,100	-	874,700,000	10,000,000	33,735,000	87,470,000	87,470,000	87,470,000	87,470,000	87,470,000	87,470,000	306,145,000
		13층	1	419,634,900	455,465,100	-	875,100,000	10,000,000	33,755,000	87,510,000	87,510,000	87,510,000	87,510,000	87,510,000	87,510,000	306,285,000
84C	201동 6호	14층	1	419,634,900	455,865,100	-	875,500,000	10,000,000	33,775,000	87,550,000	87,550,000	87,550,000	87,550,000	87,550,000	87,550,000	306,425,000
		15층	1	419,634,900	456,365,100	-	876,000,000	10,000,000	33,8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306,600,000
		16층	1	419,634,900	457,265,100	-	876,900,000	10,000,000	33,845,000	87,690,000	87,690,000	87,690,000	87,690,000	87,690,000	87,690,000	306,915,000
		17층	1	419,634,900	458,065,100	-	877,700,000	10,000,000	33,885,000	87,770,000	87,770,000	87,770,000	87,770,000	87,770,000	87,770,000	307,195,000
		18층	1	419,634,900	458,965,100	-	878,600,000	10,000,000	33,93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307,510,000
		19층	1	419,634,900	459,865,100	-	879,500,000	10,000,000	33,975,000	87,950,000	87,950,000	87,950,000	87,950,000	87,950,000	87,950,000	307,825,000
		21층	1	419,634,900	461,565,100	-	881,200,000	10,000,000	34,060,000	88,120,000	88,120,000	88,120,000	88,120,000	88,120,000	88,120,000	308,420,000
		22층	1	419,634,900	462,465,100	-	882,100,000	10,000,000	34,105,000	88,210,000	88,210,000	88,210,000	88,210,000	88,210,000	88,210,000	308,735,000
		23층	1	419,634,900	463,365,100	-	883,000,000	10,000,000	34,150,000	88,300,000	88,300,000	88,300,000	88,300,000	88,300,000	88,300,000	309,050,000
		24층	1	419,634,900	464,265,100	-	883,900,000	10,000,000	34,195,000	88,390,000	88,390,000	88,390,000	88,390,000	88,390,000	88,390,000	309,365,000
		25층	1	419,634,900	465,965,100	-	885,600,000	10,000,000	34,280,000	88,560,000	88,560,000	88,560,000	88,560,000	88,560,000	88,560,000	309,960,000
		26층	1	419,634,900	467,765,100	-	887,400,000	10,000,000	34,37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310,590,000
		27층	1	419,634,900	469,465,100	-	889,100,000	10,000,000	34,455,000	88,910,000	88,910,000	88,910,000	88,910,000	88,910,000	88,910,000	311,185,000
		28층	1	419,634,900	471,265,100	-	890,900,000	10,000,000	34,545,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311,815,000
		29층	1	419,634,900	472,965,100	-	892,600,000	10,000,000	34,630,000	89,260,000	89,260,000	89,260,000	89,260,000	89,260,000	89,260,000	312,410,000
		30층	1	419,634,900	474,765,100	-	894,400,000	10,000,000	34,72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313,040,000
		31층	1	419,634,900	476,465,100	-	896,100,000	10,000,000	34,805,000	89,610,000	89,610,000	89,610,000	89,610,000	89,610,000	89,610,000	313,635,000
		32층	1	419,634,900	478,265,100	-	897,900,000	10,000,000	34,895,000	89,790,000	89,790,000	89,790,000	89,790,000	89,790,000	89,790,000	314,265,000
		33층	1	419,634,900	479,965,100	-	899,600,000	10,000,000	34,980,000	89,960,000	89,960,000	89,960,000	89,960,000	89,960,000	89,960,000	314,860,000
		34층	1	419,634,900	481,765,100	-	901,400,000	10,000,000	35,070,000	90,140,000	90,140,000	90,140,000	90,140,000	90,140,000	90,140,000	315,490,000
		35층	1	419,634,900	483,465,100	-	903,100,000	10,000,000	35,155,000	90,310,000	90,310,000	90,310,000	90,310,000	90,310,000	90,310,000	316,085,000
		36층	1	419,634,900	484,365,100	-	904,000,000	10,000,000	35,2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316,400,000
		37층	1	419,634,900	485,265,100	-	904,900,000	10,000,000	35,245,000	90,490,000	90,490,000	90,490,000	90,490,000	90,490,000	90,490,000	316,715,000
		38층	1	419,634,900	486,165,100	-	905,800,000	10,000,000	35,290,000	90,580,000	90,580,000	90,580,000	90,580,000	90,580,000	90,580,000	317,030,000

		39층	1	419,634,900	486,965,100	-	906,600,000	10,000,000	35,330,000	90,660,000	90,660,000	90,660,000	90,660,000	90,660,000	90,660,000	317,310,000
		40층	1	419,634,900	487,465,100	-	907,100,000	10,000,000	35,355,000	90,710,000	90,710,000	90,710,000	90,710,000	90,710,000	90,710,000	317,485,000
		41층	1	419,634,900	487,865,100	-	907,500,000	10,000,000	35,375,000	90,750,000	90,750,000	90,750,000	90,750,000	90,750,000	90,750,000	317,625,000
		42층	1	419,634,900	488,365,100	-	908,000,000	10,000,000	35,4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317,800,000
		43층	1	419,634,900	488,765,100	-	908,400,000	10,000,000	35,420,000	90,840,000	90,840,000	90,840,000	90,840,000	90,840,000	90,840,000	317,940,000
		44층	1	419,634,900	489,165,100	-	908,800,000	10,000,000	35,440,000	90,880,000	90,880,000	90,880,000	90,880,000	90,880,000	90,880,000	318,080,000
84C	202,203동 6호	3층	2	419,634,900	422,365,100	-	842,000,000	10,000,000	32,1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294,700,000
		4층	2	419,634,900	423,165,100	-	842,800,000	10,000,000	32,140,000	84,280,000	84,280,000	84,280,000	84,280,000	84,280,000	84,280,000	294,980,000
		5층	2	419,634,900	424,065,100	-	843,700,000	10,000,000	32,185,000	84,370,000	84,370,000	84,370,000	84,370,000	84,370,000	84,370,000	295,295,000
		6층	2	419,634,900	424,865,100	-	844,500,000	10,000,000	32,225,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295,575,000
		7층	2	419,634,900	425,765,100	-	845,400,000	10,000,000	32,270,000	84,540,000	84,540,000	84,540,000	84,540,000	84,540,000	84,540,000	295,890,000
		8층	2	419,634,900	426,565,100	-	846,200,000	10,000,000	32,310,000	84,620,000	84,620,000	84,620,000	84,620,000	84,620,000	84,620,000	296,170,000
		9층	2	419,634,900	427,465,100	-	847,100,000	10,000,000	32,355,000	84,710,000	84,710,000	84,710,000	84,710,000	84,710,000	84,710,000	296,485,000
		10층	2	419,634,900	428,265,100	-	847,900,000	10,000,000	32,395,000	84,790,000	84,790,000	84,790,000	84,790,000	84,790,000	84,790,000	296,765,000
		11층	2	419,634,900	428,665,100	-	848,300,000	10,000,000	32,415,000	84,830,000	84,830,000	84,830,000	84,830,000	84,830,000	84,830,000	296,905,000
		12층	2	419,634,900	429,165,100	-	848,800,000	10,000,000	32,440,000	84,880,000	84,880,000	84,880,000	84,880,000	84,880,000	84,880,000	297,080,000
		13층	2	419,634,900	429,565,100	-	849,200,000	10,000,000	32,460,000	84,920,000	84,920,000	84,920,000	84,920,000	84,920,000	84,920,000	297,220,000
		14층	2	419,634,900	429,965,100	-	849,600,000	10,000,000	32,480,000	84,960,000	84,960,000	84,960,000	84,960,000	84,960,000	84,960,000	297,360,000
		15층	2	419,634,900	430,365,100	-	850,000,000	10,000,000	32,500,000	85,000,000	85,000,000	85,000,000	85,000,000	85,000,000	85,000,000	297,500,000
		16층	2	419,634,900	431,265,100	-	850,900,000	10,000,000	32,545,000	85,090,000	85,090,000	85,090,000	85,090,000	85,090,000	85,090,000	297,815,000
		17층	2	419,634,900	432,065,100	-	851,700,000	10,000,000	32,585,000	85,170,000	85,170,000	85,170,000	85,170,000	85,170,000	85,170,000	298,095,000
		18층	2	419,634,900	432,965,100	-	852,600,000	10,000,000	32,630,000	85,260,000	85,260,000	85,260,000	85,260,000	85,260,000	85,260,000	298,410,000
		20층	2	419,634,900	434,665,100	-	854,300,000	10,000,000	32,715,000	85,430,000	85,430,000	85,430,000	85,430,000	85,430,000	85,430,000	299,005,000
		21층	2	419,634,900	435,465,100	-	855,100,000	10,000,000	32,755,000	85,510,000	85,510,000	85,510,000	85,510,000	85,510,000	85,510,000	299,285,000
		22층	2	419,634,900	436,365,100	-	856,000,000	10,000,000	32,8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299,600,000
		23층	2	419,634,900	437,165,100	-	856,800,000	10,000,000	32,840,000	85,680,000	85,680,000	85,680,000	85,680,000	85,680,000	85,680,000	299,880,000
		24층	2	419,634,900	438,065,100	-	857,700,000	10,000,000	32,885,000	85,770,000	85,770,000	85,770,000	85,770,000	85,770,000	85,770,000	300,195,000
		25층	2	419,634,900	439,765,100	-	859,400,000	10,000,000	32,970,000	85,940,000	85,940,000	85,940,000	85,940,000	85,940,000	85,940,000	300,790,000
		26층	2	419,634,900	441,465,100	-	861,100,000	10,000,000	33,055,000	86,110,000	86,110,000	86,110,000	86,110,000	86,110,000	86,110,000	301,385,000

		27층	2	419,634,900	443,165,100	-	862,800,000	10,000,000	33,140,000	86,280,000	86,280,000	86,280,000	86,280,000	86,280,000	86,280,000	301,980,000
		28층	2	419,634,900	444,865,100	-	864,500,000	10,000,000	33,225,000	86,450,000	86,450,000	86,450,000	86,450,000	86,450,000	86,450,000	302,575,000
		29층	2	419,634,900	446,565,100	-	866,200,000	10,000,000	33,310,000	86,620,000	86,620,000	86,620,000	86,620,000	86,620,000	86,620,000	303,170,000
		30층	2	419,634,900	448,265,100	-	867,900,000	10,000,000	33,395,000	86,790,000	86,790,000	86,790,000	86,790,000	86,790,000	86,790,000	303,765,000
		31층	2	419,634,900	449,965,100	-	869,600,000	10,000,000	33,480,000	86,960,000	86,960,000	86,960,000	86,960,000	86,960,000	86,960,000	304,360,000
84C	202,203동 6호	32층	2	419,634,900	451,665,100	-	871,300,000	10,000,000	33,565,000	87,130,000	87,130,000	87,130,000	87,130,000	87,130,000	87,130,000	304,955,000
		33층	2	419,634,900	453,365,100	-	873,000,000	10,000,000	33,65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305,550,000
		34층	2	419,634,900	455,065,100	-	874,700,000	10,000,000	33,735,000	87,470,000	87,470,000	87,470,000	87,470,000	87,470,000	87,470,000	306,145,000
		35층	2	419,634,900	456,765,100	-	876,400,000	10,000,000	33,820,000	87,640,000	87,640,000	87,640,000	87,640,000	87,640,000	87,640,000	306,740,000
		36층	2	419,634,900	457,565,100	-	877,200,000	10,000,000	33,860,000	87,720,000	87,720,000	87,720,000	87,720,000	87,720,000	87,720,000	307,020,000
		37층	2	419,634,900	458,465,100	-	878,100,000	10,000,000	33,905,000	87,810,000	87,810,000	87,810,000	87,810,000	87,810,000	87,810,000	307,335,000
		38층	2	419,634,900	459,265,100	-	878,900,000	10,000,000	33,945,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307,615,000
		39층	2	419,634,900	460,165,100	-	879,800,000	10,000,000	33,99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307,930,000
		40층	2	419,634,900	460,565,100	-	880,200,000	10,000,000	34,010,000	88,020,000	88,020,000	88,020,000	88,020,000	88,020,000	88,020,000	308,070,000
		41층	2	419,634,900	461,065,100	-	880,700,000	10,000,000	34,035,000	88,070,000	88,070,000	88,070,000	88,070,000	88,070,000	88,070,000	308,245,000
		42층	2	419,634,900	461,465,100	-	881,100,000	10,000,000	34,055,000	88,110,000	88,110,000	88,110,000	88,110,000	88,110,000	88,110,000	308,385,000
		43층	2	419,634,900	461,865,100	-	881,500,000	10,000,000	34,075,000	88,150,000	88,150,000	88,150,000	88,150,000	88,150,000	88,150,000	308,525,000
		44층	2	419,634,900	462,265,100	-	881,900,000	10,000,000	34,095,000	88,190,000	88,190,000	88,190,000	88,190,000	88,190,000	88,190,000	308,665,000
84D	201동 7호	2층	1	420,103,700	443,196,300	-	863,300,000	10,000,000	33,165,000	86,330,000	86,330,000	86,330,000	86,330,000	86,330,000	86,330,000	302,155,000
		3층	1	420,103,700	444,096,300	-	864,200,000	10,000,000	33,210,000	86,420,000	86,420,000	86,420,000	86,420,000	86,420,000	86,420,000	302,470,000
		4층	1	420,103,700	444,996,300	-	865,100,000	10,000,000	33,255,000	86,510,000	86,510,000	86,510,000	86,510,000	86,510,000	86,510,000	302,785,000
		5층	1	420,103,700	445,796,300	-	865,900,000	10,000,000	33,295,000	86,590,000	86,590,000	86,590,000	86,590,000	86,590,000	86,590,000	303,065,000
		6층	1	420,103,700	446,696,300	-	866,800,000	10,000,000	33,340,000	86,680,000	86,680,000	86,680,000	86,680,000	86,680,000	86,680,000	303,380,000
		7층	1	420,103,700	447,596,300	-	867,700,000	10,000,000	33,385,000	86,770,000	86,770,000	86,770,000	86,770,000	86,770,000	86,770,000	303,695,000
		8층	1	420,103,700	448,496,300	-	868,600,000	10,000,000	33,430,000	86,860,000	86,860,000	86,860,000	86,860,000	86,860,000	86,860,000	304,010,000
		9층	1	420,103,700	449,296,300	-	869,400,000	10,000,000	33,470,000	86,940,000	86,940,000	86,940,000	86,940,000	86,940,000	86,940,000	304,290,000
		10층	1	420,103,700	450,196,300	-	870,300,000	10,000,000	33,515,000	87,030,000	87,030,000	87,030,000	87,030,000	87,030,000	87,030,000	304,605,000
		11층	1	420,103,700	450,596,300	-	870,700,000	10,000,000	33,535,000	87,070,000	87,070,000	87,070,000	87,070,000	87,070,000	87,070,000	304,745,000
		12층	1	420,103,700	451,096,300	-	871,200,000	10,000,000	33,560,000	87,120,000	87,120,000	87,120,000	87,120,000	87,120,000	87,120,000	304,920,000

		13층	1	420,103,700	451,496,300	-	871,600,000	10,000,000	33,580,000	87,160,000	87,160,000	87,160,000	87,160,000	87,160,000	87,160,000	305,060,000
		14층	1	420,103,700	451,996,300	-	872,100,000	10,000,000	33,605,000	87,210,000	87,210,000	87,210,000	87,210,000	87,210,000	87,210,000	305,235,000
		15층	1	420,103,700	452,396,300	-	872,500,000	10,000,000	33,625,000	87,250,000	87,250,000	87,250,000	87,250,000	87,250,000	87,250,000	305,375,000
		16층	1	420,103,700	453,296,300	-	873,400,000	10,000,000	33,670,000	87,340,000	87,340,000	87,340,000	87,340,000	87,340,000	87,340,000	305,690,000
		17층	1	420,103,700	454,096,300	-	874,200,000	10,000,000	33,710,000	87,420,000	87,420,000	87,420,000	87,420,000	87,420,000	87,420,000	305,970,000
84D	201동 7호	18층	1	420,103,700	454,996,300	-	875,100,000	10,000,000	33,755,000	87,510,000	87,510,000	87,510,000	87,510,000	87,510,000	87,510,000	306,285,000
		19층	1	420,103,700	455,896,300	-	876,000,000	10,000,000	33,8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306,600,000
		21층	1	420,103,700	457,596,300	-	877,700,000	10,000,000	33,885,000	87,770,000	87,770,000	87,770,000	87,770,000	87,770,000	87,770,000	307,195,000
		22층	1	420,103,700	458,496,300	-	878,600,000	10,000,000	33,93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307,510,000
		23층	1	420,103,700	459,396,300	-	879,500,000	10,000,000	33,975,000	87,950,000	87,950,000	87,950,000	87,950,000	87,950,000	87,950,000	307,825,000
		24층	1	420,103,700	460,196,300	-	880,300,000	10,000,000	34,015,000	88,030,000	88,030,000	88,030,000	88,030,000	88,030,000	88,030,000	308,105,000
		25층	1	420,103,700	461,996,300	-	882,100,000	10,000,000	34,105,000	88,210,000	88,210,000	88,210,000	88,210,000	88,210,000	88,210,000	308,735,000
		26층	1	420,103,700	463,696,300	-	883,800,000	10,000,000	34,190,000	88,380,000	88,380,000	88,380,000	88,380,000	88,380,000	88,380,000	309,330,000
		27층	1	420,103,700	465,496,300	-	885,600,000	10,000,000	34,280,000	88,560,000	88,560,000	88,560,000	88,560,000	88,560,000	88,560,000	309,960,000
		28층	1	420,103,700	467,196,300	-	887,300,000	10,000,000	34,365,000	88,730,000	88,730,000	88,730,000	88,730,000	88,730,000	88,730,000	310,555,000
		29층	1	420,103,700	468,996,300	-	889,100,000	10,000,000	34,455,000	88,910,000	88,910,000	88,910,000	88,910,000	88,910,000	88,910,000	311,185,000
		30층	1	420,103,700	470,696,300	-	890,800,000	10,000,000	34,540,000	89,080,000	89,080,000	89,080,000	89,080,000	89,080,000	89,080,000	311,780,000
		31층	1	420,103,700	472,496,300	-	892,600,000	10,000,000	34,630,000	89,260,000	89,260,000	89,260,000	89,260,000	89,260,000	89,260,000	312,410,000
		32층	1	420,103,700	474,196,300	-	894,300,000	10,000,000	34,715,000	89,430,000	89,430,000	89,430,000	89,430,000	89,430,000	89,430,000	313,005,000
		33층	1	420,103,700	475,896,300	-	896,000,000	10,000,000	34,8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313,600,000
		34층	1	420,103,700	477,696,300	-	897,800,000	10,000,000	34,890,000	89,780,000	89,780,000	89,780,000	89,780,000	89,780,000	89,780,000	314,230,000
		35층	1	420,103,700	479,396,300	-	899,500,000	10,000,000	34,975,000	89,950,000	89,950,000	89,950,000	89,950,000	89,950,000	89,950,000	314,825,000
		36층	1	420,103,700	480,296,300	-	900,400,000	10,000,000	35,020,000	90,040,000	90,040,000	90,040,000	90,040,000	90,040,000	90,040,000	315,140,000
		37층	1	420,103,700	481,196,300	-	901,300,000	10,000,000	35,065,000	90,130,000	90,130,000	90,130,000	90,130,000	90,130,000	90,130,000	315,455,000
		38층	1	420,103,700	482,096,300	-	902,200,000	10,000,000	35,110,000	90,220,000	90,220,000	90,220,000	90,220,000	90,220,000	90,220,000	315,770,000
		39층	1	420,103,700	482,896,300	-	903,000,000	10,000,000	35,15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316,050,000
		40층	1	420,103,700	483,396,300	-	903,500,000	10,000,000	35,175,000	90,350,000	90,350,000	90,350,000	90,350,000	90,350,000	90,350,000	316,225,000
		41층	1	420,103,700	483,796,300	-	903,900,000	10,000,000	35,195,000	90,390,000	90,390,000	90,390,000	90,390,000	90,390,000	90,390,000	316,365,000
		42층	1	420,103,700	484,196,300	-	904,300,000	10,000,000	35,215,000	90,430,000	90,430,000	90,430,000	90,430,000	90,430,000	90,430,000	316,505,000

		43층	1	420,103,700	484,696,300	-	904,800,000	10,000,000	35,240,000	90,480,000	90,480,000	90,480,000	90,480,000	90,480,000	90,480,000	316,680,000
		44층	1	420,103,700	485,096,300	-	905,200,000	10,000,000	35,260,000	90,520,000	90,520,000	90,520,000	90,520,000	90,520,000	90,520,000	316,820,000
	202,203동 7호	3층	2	420,103,700	427,096,300	-	847,200,000	10,000,000	32,360,000	84,720,000	84,720,000	84,720,000	84,720,000	84,720,000	84,720,000	296,520,000
		4층	2	420,103,700	427,896,300	-	848,000,000	10,000,000	32,400,000	84,800,000	84,800,000	84,800,000	84,800,000	84,800,000	84,800,000	296,800,000
		5층	2	420,103,700	428,796,300	-	848,900,000	10,000,000	32,445,000	84,890,000	84,890,000	84,890,000	84,890,000	84,890,000	84,890,000	297,115,000
84D	202,203동 7호	6층	2	420,103,700	429,596,300	-	849,700,000	10,000,000	32,485,000	84,970,000	84,970,000	84,970,000	84,970,000	84,970,000	84,970,000	297,395,000
		7층	2	420,103,700	430,496,300	-	850,600,000	10,000,000	32,530,000	85,060,000	85,060,000	85,060,000	85,060,000	85,060,000	85,060,000	297,710,000
		8층	2	420,103,700	431,296,300	-	851,400,000	10,000,000	32,570,000	85,140,000	85,140,000	85,140,000	85,140,000	85,140,000	85,140,000	297,990,000
		9층	2	420,103,700	432,196,300	-	852,300,000	10,000,000	32,615,000	85,230,000	85,230,000	85,230,000	85,230,000	85,230,000	85,230,000	298,305,000
		10층	2	420,103,700	433,096,300	-	853,200,000	10,000,000	32,660,000	85,320,000	85,320,000	85,320,000	85,320,000	85,320,000	85,320,000	298,620,000
		11층	2	420,103,700	433,496,300	-	853,600,000	10,000,000	32,680,000	85,360,000	85,360,000	85,360,000	85,360,000	85,360,000	85,360,000	298,760,000
		12층	2	420,103,700	433,896,300	-	854,000,000	10,000,000	32,7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298,900,000
		13층	2	420,103,700	434,296,300	-	854,400,000	10,000,000	32,720,000	85,440,000	85,440,000	85,440,000	85,440,000	85,440,000	85,440,000	299,040,000
		14층	2	420,103,700	434,796,300	-	854,900,000	10,000,000	32,745,000	85,490,000	85,490,000	85,490,000	85,490,000	85,490,000	85,490,000	299,215,000
		15층	2	420,103,700	435,196,300	-	855,300,000	10,000,000	32,765,000	85,530,000	85,530,000	85,530,000	85,530,000	85,530,000	85,530,000	299,355,000
		16층	2	420,103,700	435,996,300	-	856,100,000	10,000,000	32,805,000	85,610,000	85,610,000	85,610,000	85,610,000	85,610,000	85,610,000	299,635,000
		17층	2	420,103,700	436,896,300	-	857,000,000	10,000,000	32,850,000	85,700,000	85,700,000	85,700,000	85,700,000	85,700,000	85,700,000	299,950,000
		18층	2	420,103,700	437,796,300	-	857,900,000	10,000,000	32,895,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300,265,000
		20층	2	420,103,700	439,496,300	-	859,600,000	10,000,000	32,980,000	85,960,000	85,960,000	85,960,000	85,960,000	85,960,000	85,960,000	300,860,000
		21층	2	420,103,700	440,296,300	-	860,400,000	10,000,000	33,020,000	86,040,000	86,040,000	86,040,000	86,040,000	86,040,000	86,040,000	301,140,000
		22층	2	420,103,700	441,196,300	-	861,300,000	10,000,000	33,065,000	86,130,000	86,130,000	86,130,000	86,130,000	86,130,000	86,130,000	301,455,000
		23층	2	420,103,700	441,996,300	-	862,100,000	10,000,000	33,105,000	86,210,000	86,210,000	86,210,000	86,210,000	86,210,000	86,210,000	301,735,000
		24층	2	420,103,700	442,896,300	-	863,000,000	10,000,000	33,15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302,050,000
		25층	2	420,103,700	444,596,300	-	864,700,000	10,000,000	33,235,000	86,470,000	86,470,000	86,470,000	86,470,000	86,470,000	86,470,000	302,645,000
		26층	2	420,103,700	446,296,300	-	866,400,000	10,000,000	33,320,000	86,640,000	86,640,000	86,640,000	86,640,000	86,640,000	86,640,000	303,240,000
		27층	2	420,103,700	447,996,300	-	868,100,000	10,000,000	33,405,000	86,810,000	86,810,000	86,810,000	86,810,000	86,810,000	86,810,000	303,835,000
		28층	2	420,103,700	449,696,300	-	869,800,000	10,000,000	33,490,000	86,980,000	86,980,000	86,980,000	86,980,000	86,980,000	86,980,000	304,430,000
		29층	2	420,103,700	451,396,300	-	871,500,000	10,000,000	33,575,000	87,150,000	87,150,000	87,150,000	87,150,000	87,150,000	87,150,000	305,025,000
		30층	2	420,103,700	453,196,300	-	873,300,000	10,000,000	33,665,000	87,330,000	87,330,000	87,330,000	87,330,000	87,330,000	87,330,000	305,655,000

		31층	2	420,103,700	454,896,300	-	875,000,000	10,000,000	33,750,000	87,500,000	87,500,000	87,500,000	87,500,000	87,500,000	87,500,000	306,250,000
		32층	2	420,103,700	456,596,300	-	876,700,000	10,000,000	33,835,000	87,670,000	87,670,000	87,670,000	87,670,000	87,670,000	87,670,000	306,845,000
		33층	2	420,103,700	458,296,300	-	878,400,000	10,000,000	33,920,000	87,840,000	87,840,000	87,840,000	87,840,000	87,840,000	87,840,000	307,440,000
		34층	2	420,103,700	459,996,300	-	880,100,000	10,000,000	34,005,000	88,010,000	88,010,000	88,010,000	88,010,000	88,010,000	88,010,000	308,035,000
		35층	2	420,103,700	461,696,300	-	881,800,000	10,000,000	34,090,000	88,180,000	88,180,000	88,180,000	88,180,000	88,180,000	88,180,000	308,630,000
84D	202,203동 7호	36층	2	420,103,700	462,596,300	-	882,700,000	10,000,000	34,135,000	88,270,000	88,270,000	88,270,000	88,270,000	88,270,000	88,270,000	308,945,000
		37층	2	420,103,700	463,396,300	-	883,500,000	10,000,000	34,175,000	88,350,000	88,350,000	88,350,000	88,350,000	88,350,000	88,350,000	309,225,000
		38층	2	420,103,700	464,296,300	-	884,400,000	10,000,000	34,22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309,540,000
		39층	2	420,103,700	465,096,300	-	885,200,000	10,000,000	34,260,000	88,520,000	88,520,000	88,520,000	88,520,000	88,520,000	88,520,000	309,820,000
		40층	2	420,103,700	465,596,300	-	885,700,000	10,000,000	34,285,000	88,570,000	88,570,000	88,570,000	88,570,000	88,570,000	88,570,000	309,995,000
		41층	2	420,103,700	465,996,300	-	886,100,000	10,000,000	34,305,000	88,610,000	88,610,000	88,610,000	88,610,000	88,610,000	88,610,000	310,135,000
		42층	2	420,103,700	466,396,300	-	886,500,000	10,000,000	34,325,000	88,650,000	88,650,000	88,650,000	88,650,000	88,650,000	88,650,000	310,275,000
		43층	2	420,103,700	466,796,300	-	886,900,000	10,000,000	34,345,000	88,690,000	88,690,000	88,690,000	88,690,000	88,690,000	88,690,000	310,415,000
		44층	2	420,103,700	467,296,300	-	887,400,000	10,000,000	34,37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310,590,000
103A	201동 2호	2층	1	513,554,600	548,404,909	54,840,491	1,116,800,000	10,000,000	45,840,000	111,680,000	111,680,000	111,680,000	111,680,000	111,680,000	111,680,000	390,880,000
	201,202,203동 2호	3층	3	513,554,600	549,495,818	54,949,582	1,118,000,000	10,000,000	45,900,000	111,800,000	111,800,000	111,800,000	111,800,000	111,800,000	111,800,000	391,300,000
		4층	3	513,554,600	550,495,818	55,049,582	1,119,100,000	10,000,000	45,955,000	111,910,000	111,910,000	111,910,000	111,910,000	111,910,000	111,910,000	391,685,000
		5층	3	513,554,600	551,495,818	55,149,582	1,120,200,000	10,000,000	46,010,000	112,020,000	112,020,000	112,020,000	112,020,000	112,020,000	112,020,000	392,070,000
		6층	3	513,554,600	552,495,818	55,249,582	1,121,300,000	10,000,000	46,065,000	112,130,000	112,130,000	112,130,000	112,130,000	112,130,000	112,130,000	392,455,000
		7층	3	513,554,600	553,586,727	55,358,673	1,122,500,000	10,000,000	46,125,000	112,250,000	112,250,000	112,250,000	112,250,000	112,250,000	112,250,000	392,875,000
		8층	3	513,554,600	554,586,727	55,458,673	1,123,600,000	10,000,000	46,180,000	112,360,000	112,360,000	112,360,000	112,360,000	112,360,000	112,360,000	393,260,000
		9층	3	513,554,600	555,586,727	55,558,673	1,124,700,000	10,000,000	46,235,000	112,470,000	112,470,000	112,470,000	112,470,000	112,470,000	112,470,000	393,645,000
		10층	3	513,554,600	556,677,636	55,667,764	1,125,900,000	10,000,000	46,295,000	112,590,000	112,590,000	112,590,000	112,590,000	112,590,000	112,590,000	394,065,000
		11층	3	513,554,600	557,132,182	55,713,218	1,126,400,000	10,000,000	46,320,000	112,640,000	112,640,000	112,640,000	112,640,000	112,640,000	112,640,000	394,240,000
		12층	3	513,554,600	557,677,636	55,767,764	1,127,000,000	10,000,000	46,350,000	112,700,000	112,700,000	112,700,000	112,700,000	112,700,000	112,700,000	394,450,000
		13층	3	513,554,600	558,223,091	55,822,309	1,127,600,000	10,000,000	46,380,000	112,760,000	112,760,000	112,760,000	112,760,000	112,760,000	112,760,000	394,660,000
		14층	3	513,554,600	558,677,636	55,867,764	1,128,100,000	10,000,000	46,405,000	112,810,000	112,810,000	112,810,000	112,810,000	112,810,000	112,810,000	394,835,000
		15층	3	513,554,600	559,223,091	55,922,309	1,128,700,000	10,000,000	46,435,000	112,870,000	112,870,000	112,870,000	112,870,000	112,870,000	112,870,000	395,045,000
		16층	3	513,554,600	560,223,091	56,022,309	1,129,800,000	10,000,000	46,490,000	112,980,000	112,980,000	112,980,000	112,980,000	112,980,000	112,980,000	395,430,000

		17층	3	513,554,600	561,223,091	56,122,309	1,130,900,000	10,000,000	46,545,000	113,090,000	113,090,000	113,090,000	113,090,000	113,090,000	113,090,000	395,815,000
		18층	3	513,554,600	562,314,000	56,231,400	1,132,100,000	10,000,000	46,605,000	113,210,000	113,210,000	113,210,000	113,210,000	113,210,000	113,210,000	396,235,000
	201동 2호	19층	1	513,554,600	563,314,000	56,331,400	1,133,200,000	10,000,000	46,660,000	113,320,000	113,320,000	113,320,000	113,320,000	113,320,000	113,320,000	396,620,000
	202,203동 2호	20층	2	513,554,600	564,314,000	56,431,400	1,134,300,000	10,000,000	46,715,000	113,430,000	113,430,000	113,430,000	113,430,000	113,430,000	113,430,000	397,005,000
	201,202,203동 2호	21층	3	513,554,600	565,404,909	56,540,491	1,135,500,000	10,000,000	46,775,000	113,550,000	113,550,000	113,550,000	113,550,000	113,550,000	113,550,000	397,425,000
103A	201,202,203동 2호	22층	3	513,554,600	566,404,909	56,640,491	1,136,600,000	10,000,000	46,830,000	113,660,000	113,660,000	113,660,000	113,660,000	113,660,000	113,660,000	397,810,000
		23층	3	513,554,600	567,404,909	56,740,491	1,137,700,000	10,000,000	46,885,000	113,770,000	113,770,000	113,770,000	113,770,000	113,770,000	113,770,000	398,195,000
		24층	3	513,554,600	568,404,909	56,840,491	1,138,800,000	10,000,000	46,940,000	113,880,000	113,880,000	113,880,000	113,880,000	113,880,000	113,880,000	398,580,000
		25층	3	513,554,600	570,495,818	57,049,582	1,141,100,000	10,000,000	47,055,000	114,110,000	114,110,000	114,110,000	114,110,000	114,110,000	114,110,000	399,385,000
		26층	3	513,554,600	572,586,727	57,258,673	1,143,400,000	10,000,000	47,170,000	114,340,000	114,340,000	114,340,000	114,340,000	114,340,000	114,340,000	400,190,000
		27층	3	513,554,600	574,586,727	57,458,673	1,145,600,000	10,000,000	47,280,000	114,560,000	114,560,000	114,560,000	114,560,000	114,560,000	114,560,000	400,960,000
		28층	3	513,554,600	576,677,636	57,667,764	1,147,900,000	10,000,000	47,395,000	114,790,000	114,790,000	114,790,000	114,790,000	114,790,000	114,790,000	401,765,000
		29층	3	513,554,600	578,677,636	57,867,764	1,150,100,000	10,000,000	47,505,000	115,010,000	115,010,000	115,010,000	115,010,000	115,010,000	115,010,000	402,535,000
		30층	3	513,554,600	580,768,545	58,076,855	1,152,400,000	10,000,000	47,620,000	115,240,000	115,240,000	115,240,000	115,240,000	115,240,000	115,240,000	403,340,000
		31층	3	513,554,600	582,768,545	58,276,855	1,154,600,000	10,000,000	47,730,000	115,460,000	115,460,000	115,460,000	115,460,000	115,460,000	115,460,000	404,110,000
		32층	3	513,554,600	584,859,455	58,485,945	1,156,900,000	10,000,000	47,845,000	115,690,000	115,690,000	115,690,000	115,690,000	115,690,000	115,690,000	404,915,000
		33층	3	513,554,600	586,950,364	58,695,036	1,159,200,000	10,000,000	47,960,000	115,920,000	115,920,000	115,920,000	115,920,000	115,920,000	115,920,000	405,720,000
		34층	3	513,554,600	588,950,364	58,895,036	1,161,400,000	10,000,000	48,070,000	116,140,000	116,140,000	116,140,000	116,140,000	116,140,000	116,140,000	406,490,000
		35층	3	513,554,600	591,041,273	59,104,127	1,163,700,000	10,000,000	48,185,000	116,370,000	116,370,000	116,370,000	116,370,000	116,370,000	116,370,000	407,295,000
		36층	3	513,554,600	592,041,273	59,204,127	1,164,800,000	10,000,000	48,240,000	116,480,000	116,480,000	116,480,000	116,480,000	116,480,000	116,480,000	407,680,000
		37층	3	513,554,600	593,041,273	59,304,127	1,165,900,000	10,000,000	48,295,000	116,590,000	116,590,000	116,590,000	116,590,000	116,590,000	116,590,000	408,065,000
		38층	3	513,554,600	594,132,182	59,413,218	1,167,100,000	10,000,000	48,355,000	116,710,000	116,710,000	116,710,000	116,710,000	116,710,000	116,710,000	408,485,000
		39층	3	513,554,600	595,132,182	59,513,218	1,168,200,000	10,000,000	48,410,000	116,820,000	116,820,000	116,820,000	116,820,000	116,820,000	116,820,000	408,870,000
		40층	3	513,554,600	595,586,727	59,558,673	1,168,700,000	10,000,000	48,435,000	116,870,000	116,870,000	116,870,000	116,870,000	116,870,000	116,870,000	409,045,000
		41층	3	513,554,600	596,132,182	59,613,218	1,169,300,000	10,000,000	48,465,000	116,930,000	116,930,000	116,930,000	116,930,000	116,930,000	116,930,000	409,255,000
		42층	3	513,554,600	596,677,636	59,667,764	1,169,900,000	10,000,000	48,495,000	116,990,000	116,990,000	116,990,000	116,990,000	116,990,000	116,990,000	409,465,000
		43층	3	513,554,600	597,132,182	59,713,218	1,170,400,000	10,000,000	48,520,000	117,040,000	117,040,000	117,040,000	117,040,000	117,040,000	117,040,000	409,640,000
		44층	3	513,554,600	597,677,636	59,767,764	1,171,000,000	10,000,000	48,550,000	117,100,000	117,100,000	117,100,000	117,100,000	117,100,000	117,100,000	409,850,000
103B	201동 1호	2층	1	514,246,000	541,140,000	54,114,000	1,109,500,000	10,000,000	45,475,000	110,950,000	110,950,000	110,950,000	110,950,000	110,950,000	110,950,000	388,325,000

		3층	1	514,246,000	542,230,909	54,223,091	1,110,700,000	10,000,000	45,535,000	111,070,000	111,070,000	111,070,000	111,070,000	111,070,000	111,070,000	388,745,000
		4층	1	514,246,000	543,230,909	54,323,091	1,111,800,000	10,000,000	45,590,000	111,180,000	111,180,000	111,180,000	111,180,000	111,180,000	111,180,000	389,130,000
		5층	1	514,246,000	544,230,909	54,423,091	1,112,900,000	10,000,000	45,645,000	111,290,000	111,290,000	111,290,000	111,290,000	111,290,000	111,290,000	389,515,000
		6층	1	514,246,000	545,230,909	54,523,091	1,114,000,000	10,000,000	45,700,000	111,400,000	111,400,000	111,400,000	111,400,000	111,400,000	111,400,000	389,900,000
		7층	1	514,246,000	546,230,909	54,623,091	1,115,100,000	10,000,000	45,755,000	111,510,000	111,510,000	111,510,000	111,510,000	111,510,000	111,510,000	390,285,000
103B	201동 1호	8층	1	514,246,000	547,321,818	54,732,182	1,116,300,000	10,000,000	45,815,000	111,630,000	111,630,000	111,630,000	111,630,000	111,630,000	111,630,000	390,705,000
		9층	1	514,246,000	548,321,818	54,832,182	1,117,400,000	10,000,000	45,870,000	111,740,000	111,740,000	111,740,000	111,740,000	111,740,000	111,740,000	391,090,000
		10층	1	514,246,000	549,321,818	54,932,182	1,118,500,000	10,000,000	45,925,000	111,850,000	111,850,000	111,850,000	111,850,000	111,850,000	111,850,000	391,475,000
		11층	1	514,246,000	549,867,273	54,986,727	1,119,100,000	10,000,000	45,955,000	111,910,000	111,910,000	111,910,000	111,910,000	111,910,000	111,910,000	391,685,000
		12층	1	514,246,000	550,321,818	55,032,182	1,119,600,000	10,000,000	45,980,000	111,960,000	111,960,000	111,960,000	111,960,000	111,960,000	111,960,000	391,860,000
		13층	1	514,246,000	550,867,273	55,086,727	1,120,200,000	10,000,000	46,010,000	112,020,000	112,020,000	112,020,000	112,020,000	112,020,000	112,020,000	392,070,000
		14층	1	514,246,000	551,412,727	55,141,273	1,120,800,000	10,000,000	46,040,000	112,080,000	112,080,000	112,080,000	112,080,000	112,080,000	112,080,000	392,280,000
		15층	1	514,246,000	551,867,273	55,186,727	1,121,300,000	10,000,000	46,065,000	112,130,000	112,130,000	112,130,000	112,130,000	112,130,000	112,130,000	392,455,000
		16층	1	514,246,000	552,867,273	55,286,727	1,122,400,000	10,000,000	46,120,000	112,240,000	112,240,000	112,240,000	112,240,000	112,240,000	112,240,000	392,840,000
		17층	1	514,246,000	553,958,182	55,395,818	1,123,600,000	10,000,000	46,180,000	112,360,000	112,360,000	112,360,000	112,360,000	112,360,000	112,360,000	393,260,000
		18층	1	514,246,000	554,958,182	55,495,818	1,124,700,000	10,000,000	46,235,000	112,470,000	112,470,000	112,470,000	112,470,000	112,470,000	112,470,000	393,645,000
		19층	1	514,246,000	555,958,182	55,595,818	1,125,800,000	10,000,000	46,290,000	112,580,000	112,580,000	112,580,000	112,580,000	112,580,000	112,580,000	394,030,000
		21층	1	514,246,000	557,958,182	55,795,818	1,128,000,000	10,000,000	46,400,000	112,800,000	112,800,000	112,800,000	112,800,000	112,800,000	112,800,000	394,800,000
		22층	1	514,246,000	559,049,091	55,904,909	1,129,200,000	10,000,000	46,460,000	112,920,000	112,920,000	112,920,000	112,920,000	112,920,000	112,920,000	395,220,000
		23층	1	514,246,000	560,049,091	56,004,909	1,130,300,000	10,000,000	46,515,000	113,030,000	113,030,000	113,030,000	113,030,000	113,030,000	113,030,000	395,605,000
		24층	1	514,246,000	561,049,091	56,104,909	1,131,400,000	10,000,000	46,570,000	113,140,000	113,140,000	113,140,000	113,140,000	113,140,000	113,140,000	395,990,000
		25층	1	514,246,000	563,049,091	56,304,909	1,133,600,000	10,000,000	46,680,000	113,360,000	113,360,000	113,360,000	113,360,000	113,360,000	113,360,000	396,760,000
		26층	1	514,246,000	565,140,000	56,514,000	1,135,900,000	10,000,000	46,795,000	113,590,000	113,590,000	113,590,000	113,590,000	113,590,000	113,590,000	397,565,000
		27층	1	514,246,000	567,140,000	56,714,000	1,138,100,000	10,000,000	46,905,000	113,810,000	113,810,000	113,810,000	113,810,000	113,810,000	113,810,000	398,335,000
		28층	1	514,246,000	569,230,909	56,923,091	1,140,400,000	10,000,000	47,020,000	114,040,000	114,040,000	114,040,000	114,040,000	114,040,000	114,040,000	399,140,000
		29층	1	514,246,000	571,230,909	57,123,091	1,142,600,000	10,000,000	47,130,000	114,260,000	114,260,000	114,260,000	114,260,000	114,260,000	114,260,000	399,910,000
		30층	1	514,246,000	573,321,818	57,332,182	1,144,900,000	10,000,000	47,245,000	114,490,000	114,490,000	114,490,000	114,490,000	114,490,000	114,490,000	400,715,000
		31층	1	514,246,000	575,321,818	57,532,182	1,147,100,000	10,000,000	47,355,000	114,710,000	114,710,000	114,710,000	114,710,000	114,710,000	114,710,000	401,485,000
		32층	1	514,246,000	577,321,818	57,732,182	1,149,300,000	10,000,000	47,465,000	114,930,000	114,930,000	114,930,000	114,930,000	114,930,000	114,930,000	402,255,000

		33층	1	514,246,000	579,412,727	57,941,273	1,151,600,000	10,000,000	47,580,000	115,160,000	115,160,000	115,160,000	115,160,000	115,160,000	115,160,000	403,060,000
		34층	1	514,246,000	581,412,727	58,141,273	1,153,800,000	10,000,000	47,690,000	115,380,000	115,380,000	115,380,000	115,380,000	115,380,000	115,380,000	403,830,000
		35층	1	514,246,000	583,503,636	58,350,364	1,156,100,000	10,000,000	47,805,000	115,610,000	115,610,000	115,610,000	115,610,000	115,610,000	115,610,000	404,635,000
		36층	1	514,246,000	584,503,636	58,450,364	1,157,200,000	10,000,000	47,860,000	115,720,000	115,720,000	115,720,000	115,720,000	115,720,000	115,720,000	405,020,000
		37층	1	514,246,000	585,503,636	58,550,364	1,158,300,000	10,000,000	47,915,000	115,830,000	115,830,000	115,830,000	115,830,000	115,830,000	115,830,000	405,405,000
103B	201동 1호	38층	1	514,246,000	586,503,636	58,650,364	1,159,400,000	10,000,000	47,970,000	115,940,000	115,940,000	115,940,000	115,940,000	115,940,000	115,940,000	405,790,000
		39층	1	514,246,000	587,594,545	58,759,455	1,160,600,000	10,000,000	48,030,000	116,060,000	116,060,000	116,060,000	116,060,000	116,060,000	116,060,000	406,210,000
		40층	1	514,246,000	588,049,091	58,804,909	1,161,100,000	10,000,000	48,055,000	116,110,000	116,110,000	116,110,000	116,110,000	116,110,000	116,110,000	406,385,000
		41층	1	514,246,000	588,594,545	58,859,455	1,161,700,000	10,000,000	48,085,000	116,170,000	116,170,000	116,170,000	116,170,000	116,170,000	116,170,000	406,595,000
		42층	1	514,246,000	589,049,091	58,904,909	1,162,200,000	10,000,000	48,110,000	116,220,000	116,220,000	116,220,000	116,220,000	116,220,000	116,220,000	406,770,000
		43층	1	514,246,000	589,594,545	58,959,455	1,162,800,000	10,000,000	48,140,000	116,280,000	116,280,000	116,280,000	116,280,000	116,280,000	116,280,000	406,980,000
		44층	1	514,246,000	590,140,000	59,014,000	1,163,400,000	10,000,000	48,170,000	116,340,000	116,340,000	116,340,000	116,340,000	116,340,000	116,340,000	407,190,000
	202,203동 1호	3층	2	514,246,000	522,321,818	52,232,182	1,088,800,000	10,000,000	44,440,000	108,880,000	108,880,000	108,880,000	108,880,000	108,880,000	108,880,000	381,080,000
		4층	2	514,246,000	523,321,818	52,332,182	1,089,900,000	10,000,000	44,495,000	108,990,000	108,990,000	108,990,000	108,990,000	108,990,000	108,990,000	381,465,000
		5층	2	514,246,000	524,321,818	52,432,182	1,091,000,000	10,000,000	44,550,000	109,100,000	109,100,000	109,100,000	109,100,000	109,100,000	109,100,000	381,850,000
		6층	2	514,246,000	525,321,818	52,532,182	1,092,100,000	10,000,000	44,605,000	109,210,000	109,210,000	109,210,000	109,210,000	109,210,000	109,210,000	382,235,000
		7층	2	514,246,000	526,321,818	52,632,182	1,093,200,000	10,000,000	44,660,000	109,320,000	109,320,000	109,320,000	109,320,000	109,320,000	109,320,000	382,620,000
		8층	2	514,246,000	527,321,818	52,732,182	1,094,300,000	10,000,000	44,715,000	109,430,000	109,430,000	109,430,000	109,430,000	109,430,000	109,430,000	383,005,000
		9층	2	514,246,000	528,321,818	52,832,182	1,095,400,000	10,000,000	44,770,000	109,540,000	109,540,000	109,540,000	109,540,000	109,540,000	109,540,000	383,390,000
		10층	2	514,246,000	529,321,818	52,932,182	1,096,500,000	10,000,000	44,825,000	109,650,000	109,650,000	109,650,000	109,650,000	109,650,000	109,650,000	383,775,000
		11층	2	514,246,000	529,776,364	52,977,636	1,097,000,000	10,000,000	44,850,000	109,700,000	109,700,000	109,700,000	109,700,000	109,700,000	109,700,000	383,950,000
		12층	2	514,246,000	530,321,818	53,032,182	1,097,600,000	10,000,000	44,880,000	109,760,000	109,760,000	109,760,000	109,760,000	109,760,000	109,760,000	384,160,000
		13층	2	514,246,000	530,776,364	53,077,636	1,098,100,000	10,000,000	44,905,000	109,810,000	109,810,000	109,810,000	109,810,000	109,810,000	109,810,000	384,335,000
		14층	2	514,246,000	531,321,818	53,132,182	1,098,700,000	10,000,000	44,935,000	109,870,000	109,870,000	109,870,000	109,870,000	109,870,000	109,870,000	384,545,000
		15층	2	514,246,000	531,776,364	53,177,636	1,099,200,000	10,000,000	44,960,000	109,920,000	109,920,000	109,920,000	109,920,000	109,920,000	109,920,000	384,720,000
		16층	2	514,246,000	532,776,364	53,277,636	1,100,300,000	10,000,000	45,015,000	110,030,000	110,030,000	110,030,000	110,030,000	110,030,000	110,030,000	385,105,000
		17층	2	514,246,000	533,776,364	53,377,636	1,101,400,000	10,000,000	45,070,000	110,140,000	110,140,000	110,140,000	110,140,000	110,140,000	110,140,000	385,490,000
		18층	2	514,246,000	534,776,364	53,477,636	1,102,500,000	10,000,000	45,125,000	110,250,000	110,250,000	110,250,000	110,250,000	110,250,000	110,250,000	385,875,000
		20층	2	514,246,000	536,776,364	53,677,636	1,104,700,000	10,000,000	45,235,000	110,470,000	110,470,000	110,470,000	110,470,000	110,470,000	110,470,000	386,645,000

		21층	2	514,246,000	537,776,364	53,777,636	1,105,800,000	10,000,000	45,290,000	110,580,000	110,580,000	110,580,000	110,580,000	110,580,000	110,580,000	387,030,000
		22층	2	514,246,000	538,776,364	53,877,636	1,106,900,000	10,000,000	45,345,000	110,690,000	110,690,000	110,690,000	110,690,000	110,690,000	110,690,000	387,415,000
		23층	2	514,246,000	539,776,364	53,977,636	1,108,000,000	10,000,000	45,4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387,800,000
		24층	2	514,246,000	540,776,364	54,077,636	1,109,100,000	10,000,000	45,455,000	110,910,000	110,910,000	110,910,000	110,910,000	110,910,000	110,910,000	388,185,000
		25층	2	514,246,000	542,776,364	54,277,636	1,111,300,000	10,000,000	45,565,000	111,130,000	111,130,000	111,130,000	111,130,000	111,130,000	111,130,000	388,955,000
		26층	2	514,246,000	544,776,364	54,477,636	1,113,500,000	10,000,000	45,675,000	111,350,000	111,350,000	111,350,000	111,350,000	111,350,000	111,350,000	389,725,000
		27층	2	514,246,000	546,776,364	54,677,636	1,115,700,000	10,000,000	45,785,000	111,570,000	111,570,000	111,570,000	111,570,000	111,570,000	111,570,000	390,495,000
		28층	2	514,246,000	548,776,364	54,877,636	1,117,900,000	10,000,000	45,895,000	111,790,000	111,790,000	111,790,000	111,790,000	111,790,000	111,790,000	391,265,000
		29층	2	514,246,000	550,776,364	55,077,636	1,120,100,000	10,000,000	46,005,000	112,010,000	112,010,000	112,010,000	112,010,000	112,010,000	112,010,000	392,035,000
		30층	2	514,246,000	552,776,364	55,277,636	1,122,300,000	10,000,000	46,115,000	112,230,000	112,230,000	112,230,000	112,230,000	112,230,000	112,230,000	392,805,000
		31층	2	514,246,000	554,776,364	55,477,636	1,124,500,000	10,000,000	46,225,000	112,450,000	112,450,000	112,450,000	112,450,000	112,450,000	112,450,000	393,575,000
		32층	2	514,246,000	556,776,364	55,677,636	1,126,700,000	10,000,000	46,335,000	112,670,000	112,670,000	112,670,000	112,670,000	112,670,000	112,670,000	394,345,000
		33층	2	514,246,000	558,776,364	55,877,636	1,128,900,000	10,000,000	46,445,000	112,890,000	112,890,000	112,890,000	112,890,000	112,890,000	112,890,000	395,115,000
		34층	2	514,246,000	560,776,364	56,077,636	1,131,100,000	10,000,000	46,555,000	113,110,000	113,110,000	113,110,000	113,110,000	113,110,000	113,110,000	395,885,000
103B	202,203동 1호	35층	2	514,246,000	562,776,364	56,277,636	1,133,300,000	10,000,000	46,665,000	113,330,000	113,330,000	113,330,000	113,330,000	113,330,000	113,330,000	396,655,000
		36층	2	514,246,000	563,776,364	56,377,636	1,134,400,000	10,000,000	46,720,000	113,440,000	113,440,000	113,440,000	113,440,000	113,440,000	113,440,000	397,040,000
		37층	2	514,246,000	564,776,364	56,477,636	1,135,500,000	10,000,000	46,775,000	113,550,000	113,550,000	113,550,000	113,550,000	113,550,000	113,550,000	397,425,000
		38층	2	514,246,000	565,776,364	56,577,636	1,136,600,000	10,000,000	46,830,000	113,660,000	113,660,000	113,660,000	113,660,000	113,660,000	113,660,000	397,810,000
		39층	2	514,246,000	566,776,364	56,677,636	1,137,700,000	10,000,000	46,885,000	113,770,000	113,770,000	113,770,000	113,770,000	113,770,000	113,770,000	398,195,000
		40층	2	514,246,000	567,230,909	56,723,091	1,138,200,000	10,000,000	46,910,000	113,820,000	113,820,000	113,820,000	113,820,000	113,820,000	113,820,000	398,370,000
		41층	2	514,246,000	567,776,364	56,777,636	1,138,800,000	10,000,000	46,940,000	113,880,000	113,880,000	113,880,000	113,880,000	113,880,000	113,880,000	398,580,000
		42층	2	514,246,000	568,230,909	56,823,091	1,139,300,000	10,000,000	46,965,000	113,930,000	113,930,000	113,930,000	113,930,000	113,930,000	113,930,000	398,755,000
		43층	2	514,246,000	568,776,364	56,877,636	1,139,900,000	10,000,000	46,995,000	113,990,000	113,990,000	113,990,000	113,990,000	113,990,000	113,990,000	398,965,000
		44층	2	514,246,000	569,230,909	56,923,091	1,140,400,000	10,000,000	47,020,000	114,040,000	114,040,000	114,040,000	114,040,000	114,040,000	114,040,000	399,14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 제1항에 의거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청라국제업무단지 M5BL내 본 주택과 오피스텔이 같이 조성된 단지로서 단지 내 일부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공급됩니다.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면적 산정과 관계없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입주자가 공동사용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위치/면적 산정 및 공동 사용등을 사유로 계약의 해지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여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며, 취득세 및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은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부담합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 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가전 등) 공급금액 미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해야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 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기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을 납부기일로 하며, 해당일까지 납부한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 다음 날부터 연체료를 산정하며, 연체기간에 포함되는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도 연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중도금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 **중도금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소득, 신용등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중도금대출 불가를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관련 소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각 대지지분은 각 용도별 연면적과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 세대에 포함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공부정리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포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기타 공용면적 또한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청약 및 계약 시, 단지 내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사업지 주변현황(개발현황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 등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주변현황(개발현황 등)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관련 소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 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2025.06.27.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84A	84B	84C	84D	103A	103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	2	2	2	-	-	9
	장기복무 제대군인		3	2	2	2	-	-	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2	2	2	-	-	9
	중소기업 근로자		6	4	6	4	-	-	20
	장애인	경기도	1	1	1	1	-	-	4
		서울특별시	1	1	1	1	-	-	4
		인천광역시	2	1	1	1	-	-	5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26	11	13	12	13	11	8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2	6	6	6	6	6	42
	경기도, 서울특별시 거주자(50%)		12	6	6	6	6	6	42
신혼부부 특별공급			42	14	20	17	-	-	9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	4	4	4	4	2	26
생애최초 특별공급			45	18	22	20	-	-	105
신생아 특별공급			26	12	12	10	-	-	60
합 계			190	84	98	88	29	25	51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노부모부양 **신생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td></tr>
<tr><td>무주택</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td></tr>
</table>

요건

- 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0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td></tr>
<tr><td>추천기관</td><td>
<table>
<tr><th colspan="2">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th><th>추천기관</th></tr>
<tr><td colspan="2">국가유공자</td><td rowspan="2">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td></tr>
<tr><td colspan="2">장기복무 제대군인</td></tr>
<tr><td colspan="2">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td><td>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tr>
<tr><td colspan="2">중소기업 근로자</td><td>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td></tr>
<tr><td rowspan="3">장애인</td><td>경기도</td><td>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td></tr>
<tr><td>서울특별시</td><td>서울특별시청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td></tr>
<tr><td>인천광역시</td><td>인천광역시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td></tr>
</table>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td></tr>
</table>

4-2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6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이 선정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종사자</td></tr>
</table>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1.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 2. "종사자 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 기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 전용 약국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말한다. 5.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를 말한다.
당첨자 선정방법	1.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확정자 및 예비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당첨 확정자 또는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4.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4-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 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 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 수 → ④청약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시·도 거주자**(인천광역시) 5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서울특별시) 50%**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해당시·도(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낙첨한 자가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4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93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tr><th>순위</th><th>내용</th></tr>
<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
</table>
■ ③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td></tr>
</table>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2.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4">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4">3억3,100만원
이하</td><td rowspan="3">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td></tr>
<tr><td colspan="2"><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6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r><td>①무주택기간</td><td>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able></td></tr>
</table>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6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7% 범위 : 105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금회 60㎡이하 주택형 공급이 없으므로 '단독세대' 신청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3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td></tr>
<tr><td>비고</td><td>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
</td></tr>
</table>

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2.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7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2.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7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2026.11.02.(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7-1)
일반공급	1순위	2026.11.03.(화) 09:00~17:30		•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6.11.04.(수)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h>인감증명 방식</th><th>본인서명확인 방식</th></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당첨자 발표 안내**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 일시 : 2026.11.10.(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10.(화) ~ 2026.11.19.(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1.10.(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 2023.04.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9항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대상자의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가점제 당첨자의 가점 점수에 오류가 있어 점수가 낮아진 경우, 재산정한 점수가 최저가점보다 높다면 당첨자격은 유효하나,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 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 당첨자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신청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서류 제출 일정	접수 장소	비고
당첨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6.11.12.(목) ~ 2026.11.16.(월) (주말포함, 5일간) 10:00 ~ 16:00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견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7-1) ※ 아래의 청약유형, 신청내역에 맞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방문 예약제 진행 예정 (별도 고지)
예비입주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 상기 일정 및 운영시간은 현장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외 일정에 제출은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2.)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별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확인의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 서류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의 대조, 검증 절차 후 추가 소명 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며, 지정된 기한 내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격 검증서류 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계약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합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제출 서류(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 / 공통 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 12. 21. 이후 신규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 기준 : 본인 발급용 (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아파트 계약용 / 제출처 :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인감확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전체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사항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군복무 기간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중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의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추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갈음)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표4.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참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배점기준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3세대 구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 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중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공개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자산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 [견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혼인신고일 전 출산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중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가점산정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가점산정 기준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	• 기록대조일 : 직계존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전체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직계비속	• 기록대조일 : 직계 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전체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중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자격 요건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하여 5 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제출 참조]**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공개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자산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 [견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신생아 특별공급	○		신생아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직계비속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가 입양아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임신의 경우
		○	출생증명서	본인	• 2세 미만 자녀를 둔 사실을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공개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자산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 [견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중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산정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가점제 당첨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 직계 존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발급기간 : 직계 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대리인 구비 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				
	○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발급 기준 : 본인 발급용 (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아파트 계약용 / 제출처 :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 12. 21 이후 신규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 건물에 관한 공문,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전세 피해자 제출 서류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가능한 여타의 자료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 대상자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 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①,② 해당 직장

	전년도(2025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①,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② 계속적인 근로자(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홈택스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⑤ 해당 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세무서, 해당 직장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기 서류 미비시 접수받지 않으며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 중 당첨자에 한하여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2.**)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 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③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하셨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특별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특별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특별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상기 발급 서류는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근무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9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및 중도금대출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체결	계약체결장소
정당당첨자 (일반공급/특별공급)	2026.11.22.(일)~2026.11.24.(화) / 3일간 (10:00 ~ 16:00)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견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7-1)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기한 내 제출 시 제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발급용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본인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사본) - 수입인지 세액기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또는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본인	•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신분증 및 인감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만 인정합니다.(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아파트 계약용으로 사용 불가)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입계좌	하나은행	205-910018-15305	신한자산신탁(주)
2차 계약금·중도금·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신한자산신탁(주)

※ 상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계좌이며, 발코니 확장 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좌는 별도이오니 이점 확인하셔서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도 명기될 예정입니다.
※ 2차 계약금의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나, 연체료는 적용되며 공급계약서의 조항을 따르기로 합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계좌 (하나은행 납부계좌 : 205-910018-15305) 예금주 : 신한자산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2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2010101홍길동'으로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에 제출 바랍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한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또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 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까지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합니다. 대납종료일에 사업주체가 최종 대납한 이자의 계산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며,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되거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2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금리적용기준 차이로 총 발생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 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자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 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 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또는 시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세대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를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

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10 참고사항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 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 중복 당첨시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됩니다.(접수일시가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①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②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① 당첨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제53조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와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층·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인지세법시행규칙」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전매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준(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및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대상증서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납부기한	2023.01.01. 시행된「인지세법」제8조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금액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지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11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현관중문, 벽/바닥 마감재, 조명 특화, 수납 특화, 주방 특화, 욕실 특화, 평면 특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계약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별도 계약이 아닌 **분양사업자(㈜청라스마트시티), 시공사(㈜대우건설), 수분양자 간** 3자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선택품목의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기간
84A	5,806,000	580,600	5,225,400
84B	7,174,000	717,400	6,456,600
84C	9,158,000	915,800	8,242,200
84D	8,368,000	836,800	7,531,200
103A	8,854,000	885,400	7,968,600
103B	12,329,000	1,232,900	11,096,100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금액	하나은행	205-910018-17605	신한자산신탁(주)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의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201동 1501호 홍길동 → 2011501홍길동 / 201동 101호 홍길동 → 2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의 납부계좌는 세대별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며, 발코니 확장 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는 약정일자에 발코니 확장 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더라도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부분적인 확장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후,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동주택(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전동빨래건조대,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부위 마감 연장, 거실 아트월 및 우물천장 확대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품질(타사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분양안내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환기구, 급배수관, 에어컨 매립배관의 위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 및 확장 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 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및 분양안내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소방기구,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온도조절기, 전기/통신분전반 등의 설치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하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환기부족, 생활환경 등으로 결로 및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우천시 비확장 발코니 내부에 물고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에는 바닥배수구가 설치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소방기구,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 및 바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 기본사항

• 추가선택품목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설치된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의 디자인이 적용되며, 옵션의 형태 및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분양안내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4B, 84C, 84D – 84A 기준 / 103B – 103A기준)
• 추가선택품목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온도조절기,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 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적용·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제품의 고유특성, 가공 등으로 색상, 패턴, 나누기 등이 견본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사의 도산 등 공급여건에 따라 모델, 사양, 디자인 등의 변경, 동급이상 제품 또는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모든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무상)은 발코니 확장 기준 안내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추가 선택품목 공사비	하나은행	205-910018-16005	신한자산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견본주택 내에서 추가 선택 계약금의 현금 또는 수표 납부, 신용카드 결제 납부는 불가합니다.
-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이체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201동 201호 경우, 입금자명을 '2010201홍길동'으로 기재)
- 상기 지정 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 및 발코니 확장 입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및 공급금액

1. 라이프업 스타일링(유상)

① 현관 중문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택 항목	약식표기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현관 중문	전타입	1안	• 미설치	2안	• 3연동 자동중문	84A	2,000,000	200,000	1,800,000	-
						84B	2,000,000	200,000	1,800,000	
						84C	2,000,000	200,000	1,800,000	
						84D	2,000,000	200,000	1,800,000	
						103A	2,000,000	200,000	1,800,000	
						103B	2,000,000	200,000	1,800,000	

- 현관중문 기본형(1안)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센서, 스위치, 도어 프레임의 상세 및 규격, 유리의 형태,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자동형으로 현관에서 세대로 진입 시 자동으로 열리며, 세대에서 나갈 시에는 별도의 버튼으로 작동하며 개별적인 속도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 본 공사 시 센서 및 버튼의 사양 및 규격,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등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공사상의 이유로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 화재감지기, 조명기구의 배치 및 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선택 여부에 따라 가구 마감판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미선택시 별도의 전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②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 항목	약식표기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벽/ 바닥 마감재 특화	84A/84B/ 84C	1안	• 거실아트월타일 (600*600) • 실크벽지 • 강마루(섬유판)	2안	•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 복도 시트판넬 • 복도 1면 간접조명 • 광폭 강마루(섬유판)	84A	5,490,000	549,000	4,941,000	-
						84B	4,550,000	455,000	4,095,000	
						84C	6,470,000	647,000	5,823,000	
	84D			2안	•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복도 아트월 세라믹타일 연장 •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 복도 시트판넬 • 복도 1면 간접조명 • 광폭 강마루(섬유판)	84D	6,470,000	647,000	5,823,000	-
	103A			2-1안	•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복도 아트월 세라믹타일 연장 •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 복도 시트판넬 • 복도 1면 간접조명 • 광폭 강마루(섬유판)	103A	7,020,000	702,000	6,318,000	복도 수납 특화(유상 2안) 미선택 시
				2-2안	•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복도 아트월 세라믹타일 연장 •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 복도 시트판넬 • 복도 1면 간접조명 • 광폭 강마루(섬유판)	103A	6,470,000	647,000	5,823,000	복도 수납 특화(유상 2안) 선택 시
	103B			2안	•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 복도 시트판넬 • 복도 2면 간접조명 • 광폭 강마루(섬유판)	103B	7,300,000	730,000	6,570,000	-

- 본공사 시 강마루(섬유판), 광폭강마루(섬유판), 아트월 세라믹 타일의 제조사 및 규격, 색상, 패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 마감재 옵션에 따라 마감재 두께에 따른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부위별로 규격, 나누기, 시공 상세 등이 상이합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단위실에 비치된 샘플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복도의 시트판넬은 설치되지 않으며, 도배로 마감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안티스크래치벽지는 도배지가 시공되는 벽 부분에 해당되며, 천장은 제외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선택형(2안) 선택 시 복도에 설치되는 간접조명의 규격 및 상세, 형태는 본공사시 접합부 마감품질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 및 평면 옵션에 따라 마감재의 시공부위가 상이합니다.

③ 조명 특화

선택 항목	약식표기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조명 특화	84A/84B 84C/84D 103B	1안	• 기본 조명 기구 • 스마트 스위치 일반형 (거실, 주방, 침실)	2안	•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라인 간접등+침실1,2,3엣지등 •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주방포함) • 거실 실링팬	84A	2,280,000	228,000	2,052,000	-
						84B	2,820,000	282,000	2,538,000	
						84C	2,280,000	228,000	2,052,000	
						84D	2,820,000	282,000	2,538,000	
						103B	2,740,000	274,000	2,466,000	
	103A			2-1안	•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라인 간접등+침실1,2,3 엣지등 •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주방포함) • 거실 실링팬	103A	2,890,000	289,000	2,601,000	알파룸 추가(무상 1-2안) 미선택 시
				2-2안	•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라인 간접등+침실1,2,3 엣지등, 알파룸 엣지등 •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주방포함) • 거실 실링팬	103A	3,110,000	311,000	2,799,000	알파룸 추가(무상 1-2안) 선택 시

- 조명특화옵션 선택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조명특화옵션 선택 시 거실, 침실등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하부면을 비추는 조명부분만 제공됩니다.
- 거실/침실 조명특화 선택시에만 디밍과 색온도 제어가 가능한 풀터치 고급형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미선택시 조명ON/OFF 기능만 가능한 일반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스마트스위치의 설치 위치에 따라 스마트스위치의 기능 및 형태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타입 주방 스마트스위치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급형 스마트 스위치의 음성인식 기능은 침실에 한해서 구현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개별호실 내 안내되어 있는 일반형 스마트스위치의 POP 이미지는 샘플 이미지이며, 공간 및 조명 회로에 따라 버튼 수량은 상이합니다.
- 고급형스마트스위치(침실) 음성인식기능은 마이크와의 거리 및 방향에 따라 음성인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명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거실 실링팬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거실 실링팬은 조명이 없는 형태로 무선 리모콘을 통해 제어되며, 월패드, 홈네트워크 및 별도 스위치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2. 라이프업 수납(유상)

① 현관 수납 특화

선택 항목	약식표기(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현관 수납 특화	전타입	1안	• 신발장 : 기본형 • 현관 창고 : 여닫이 도어 • 현관바닥 : 타일(600*600)	2안	• 신발장 특화 : 오픈장(조명포함)+디자인선반(조명포함)+하부조명 • 현관 창고 특화 : 폴딩도어+벽판넬 시스템선반+현관 가구판넬 마감 • 현관바닥 : 대형타일(600*1,200)	84A	1,840,000	184,000	1,656,000	-
						84B	1,830,000	183,000	1,647,000	
						84C	1,920,000	192,000	1,728,000	
						84D	2,410,000	241,000	2,169,000	
						103A	3,130,000	313,000	2,817,000	
						103B	2,500,000	250,000	2,250,000	

- 현관 수납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수납 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 및 가구도어 열림방향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선택 시, 조명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유상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현관 창고 내 시스템선반은 설치되지 않으며, 현관창고 내부는 도배로 마감됩니다.
- 현관 수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현관 창고 도어 및 양쪽 마감판의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신발장 상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디자인선반(조명) 설치에 따라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오픈 장식장 조명 스위치의 설치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팬트리 수납 특화

선택 항목	약식표기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팬트리 수납 특화	84B/84C 84D	1안	• 여닫이 도어	2안	• 여닫이 도어+폴대형 시스템 선반	84B	600,000	60,000	540,000	-
						84C	520,000	52,000	468,000	
						84D	600,000	60,000	540,000	
	103B			2안	• 유리 도어 + 수납장(조명 포함)	103B	2,810,000	281,000	2,529,000	
팬트리1 수납 특화	103A	1안	• 여닫이 도어	2안	• 유리 도어 + 수납장(조명 포함)	103A	3,330,000	333,000	2,997,000	알파룸 추가(무상 1-2안) 미선택 시
팬트리2 수납 특화	103A	1안	• 여닫이 도어	2안	• 여닫이 도어 + 폴대형 시스템 선반	103A	680,000	68,000	612,000	알파룸 추가(무상 1-2안) 미선택 시

- 팬트리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팬트리 수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팬트리 내 시스템선반 및 수납장(타입별 상이)은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 벽체는 도배로 마감됩니다.
• 103A타입 팬트리1 수납 특화 옵션 및 팬트리2 수납 특화 옵션은 알파룸 추가(무상1-2안) 미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③ 복도 수납 특화

선택 항목	약식표기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복도 수납 특화	103A	1안	• 미설치	2안	• 복도 수납장	103A	780,000	78,000	702,000	-

• 복도 수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복도 수납장(타입별 상이)은 설치되지 않으며, 벽/바닥 마감재 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도배 또는 시트판넬로 마감됩니다.
• 복도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수납장 상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 스위치의 설치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드레스룸 특화

선택 항목	약식표기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드레스룸 특화	84A/84B 84C/84D 103B	1안	• 미설치	2안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 천장형 제습기	84A	5,280,000	528,000	4,752,000	-
						84B	5,280,000	528,000	4,752,000	
						84C	5,260,000	526,000	4,734,000	
						84D	4,750,000	475,000	4,275,000	
						103B	5,980,000	598,000	5,382,000	
	103A			2-1안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 파우더장/디자인 붙박이장(조명포함) + 붙박이장 • 조명특화 • 천장형 제습기	103A	9,570,000	957,000	8,613,000	알파룸 추가(무상 1-2안) 미선택 시
				2-2안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 천장형 제습기	103A	6,100,000	610,000	5,490,000	알파룸 추가(무상 1-2안) 선택 시
드레스룸 제습기	전타입	1안	• 미설치	2안	• 천장형 제습기	전타입	830,000	83,000	747,000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 미선택시 별도 선택 가능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드레스룸 도어 및 가구는 설치되지 않으며, 도배로 마감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는 도배지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별로 선반의 규격 및 위치와 구성이 상이하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형(2안) 선택 시 3연동 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 벽체는 판넬로 마감되며, 타입별로 적용 부위가 상이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디자인 시스템 선반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점검구의 규격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기구 Spec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의 스펙, 위치, 수량,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형(2안)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가 포함됩니다.(가야/KY-1005P)
•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및 천장형 제습기 옵션 미선택 시, 별도의 전원이 설치 및 시공되지 않습니다.
• 디자인 시스템 선반(조명), 파우더장 및 붙박이장/장식장은 조명기구 유지보수를 위해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으며,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규격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디자인 시스템 선반의 제조사,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3A타입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1안)은 알파룸 추가(무상 1-2안) 미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 103A타입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2안)은 알파룸 추가(무상 1-2안) 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⑤ 침실 2/3 수납 특화

선택 항목	약식표기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침실2/3 매립형 붙박이장	84A/84C	1안	• 미설치	2안	• 침실2/3 매립형 붙박이장(2개소)	84A	2,150,000	215,000	1,935,000	-
						84C	2,150,000	215,000	1,935,000	
침실2 붙박이장	84B 103A	1안	• 미설치	2안	• 침실2 붙박이장(1개소)	84B	1,180,000	118,000	1,062,000	-
						103A	1,180,000	118,000	1,062,000	
침실2 드레스룸	84D 103B	1안	• 미설치	2안	• 여닫이도어+벽판넬 시스템 선반	84D	1,380,000	138,000	1,242,000	드레스룸 공간 구획을 위한 경량벽체 시공
						103B	1,490,000	149,000	1,341,000	
침실3 붙박이장	84B/84D 103B	1안	• 미설치	2안	• 침실3 붙박이장(1개소)	84B	940,000	94,000	846,000	-
						84D	940,000	94,000	846,000	
						103B	2,160,000	216,000	1,944,000	
침실3 드레스룸	103A	1안	• 미설치	2안	• 여닫이도어+벽판넬 시스템 선반	103A	1,310,000	131,000	1,179,000	드레스룸 공간 구획을 위한 경량벽체 시공

• 침실 2/3 수납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 및 타입별로 붙박이장의 길이 및 규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84A/C 타입 침실2,3 매립형 붙박이장 (2안) 선택 시 침실2 및 침실3의 가로폭 사이즈가 줄어들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B 타입 침실3 붙박이장(2안) 선택 시 침실3의 가로폭 사이즈가 줄어들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2/3 수납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의 크기는 각 평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규격, 상세,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2/3 수납 특화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기본제공되는 콘센트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세탁실 수납 특화

선택 항목	약식표기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세탁실 수납 특화	103A	1안	• 미설치	2안	• 세탁실 수납장	103A	630,000	63,000	567,000	-

• 세탁실 수납장 가구의 색상, 규격, 하드웨어 등 상세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실 수납 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의 스펙, 위치, 수량,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라이프업 키친(유상)

① 주방 특화

선택 항목	약식표기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주방 특화	84A	1안	• 기본형 주방가구 • 벽 : 타일(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MMA) • 국산 싱크수전+와이드 싱크볼 • 기본 액세서리(걸이형 액세서리) • 기본 조명기구	2안	• 벽/상판 : 세라믹 타일	84A	1,360,000	136,000	1,224,000	-
				3안	• 주방가구 특화 : 아일랜드/장식장+유리도어 상부장 + 상부장 하부조명 • 벽,상판 : 세라믹 타일 • 외산 싱크수전+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 특화 액세서리 : 미드웨이 액세서리+고급형 수저분리함 •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	84A	8,930,000	893,000	8,037,000	
	84B	1안	• 기본형 주방가구 • 벽 : 타일(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MMA) • 국산 싱크수전+와이드 싱크볼 • 기본 액세서리(걸이형 액세서리) • 기본 조명기구	2안	• 벽/상판 : 세라믹 타일	84B	1,950,000	195,000	1,755,000	-
				3안	• 주방가구 특화 : 주방가구 연장 +유리도어 상부장 + 상부장 하부조명 • 벽,상판 : 세라믹 타일 • 외산 싱크수전+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 특화 액세서리 : 미드웨이 액세서리+고급형 수저분리함 •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원통형 식탁 직부등	84B	6,260,000	626,000	5,634,000	
	84C	1안	• 기본형 주방가구 • 벽 : 타일(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MMA)	2안	• 벽/상판 : 세라믹 타일	84C	1,320,000	132,000	1,188,000	

			• 국산 싱크수전+와이드 싱크볼 • 기본 액세서리(걸이형 액세서리) • 기본 조명기구	3안	• 주방가구 특화 : 아일랜드 + 유리도어 상부장 + 상부장 하부조명 • 벽,상판 : 세라믹 타일 • 외산 싱크수전 +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 특화 액세서리 : 미드웨이 액세서리+고급형 수저분리함 •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	84C	6,490,000	649,000	5,841,000	-
	84D	1안	• 기본형 주방가구 • 벽 : 타일(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MMA) • 국산 싱크수전+와이드 싱크볼 • 기본 액세서리(걸이형 액세서리) • 기본 조명기구	2안	• 벽/상판 : 세라믹 타일	84D	920,000	92,000	828,000	-
				3안	• 주방가구 특화 : 주방가구 연장 +유리도어 상부장 + 상부장 하부조명 • 벽,상판 : 세라믹 타일 • 외산 싱크수전+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 특화 액세서리 : 미드웨이 액세서리+고급형 수저분리함 •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원통형 식탁 직부등	84D	4,740,000	474,000	4,266,000	
	103A	1안	• 기본형 주방가구 • 벽 : 타일(300*600) • 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 국산 싱크수전+와이드 싱크볼 • 기본 액세서리(걸이형 액세서리) • 기본 조명기구	2안	• 벽/상판 : 세라믹 타일	103A	1,110,000	111,000	999,000	-
				3안	• 주방가구 특화 : 주방가구 연장(카운터형 아일랜드)+하부장 마감특화+상부장 하부조명 • 벽,상판 : 세라믹 타일 • 외산 싱크수전+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 특화 액세서리 : 미드웨이 액세서리+고급형 수저분리함 •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원통형 식탁 직부등	103A	3,790,000	379,000	3,411,000	
	103B	1안	• 기본형 주방가구 • 벽 : 타일(300*600)• 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 국산 싱크수전+와이드 싱크볼 • 기본 액세서리(걸이형 액세서리) • 기본 조명기구	2안	• 벽/상판 : 세라믹 타일	103B	930,000	93,000	837,000	-
				3안	• 주방가구 특화 : 주방가구 연장(카운터형 아일랜드)+하부장 마감특화+상부장 하부조명 • 벽,상판 : 세라믹 타일 • 외산 싱크수전+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 특화 액세서리 : 미드웨이 액세서리+고급형 수저분리함 •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	103B	3,580,000	358,000	3,222,000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인조대리석(MMA) 및 세라믹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패턴 및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단위실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벽/상판 외의 품목은 기본형(1안)과 동일하게 설치됩니다.
- 주방특화 선택형(2안,3안) 선택에 따라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은 가구 시공성 향상 및 전기/설비 간섭구간으로 인해 본공사시 규격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설치 위치 및 길이가 상이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은 유지보수를 위해 상부에 점검구가 추가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미드웨이 ACC는 타입별로 레이아웃, 규격,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84B/D 및 103A/B 타입은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주방가구의 규격, 서랍 설치 수량 등이 변경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A/B 타입은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하부장 마감 색상이 변경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특화 기본형(1안) 및 선택형(2안) 선택 시 기본 싱크수전 (진명홈바스 / JMK 7200WS)가 설치됩니다.
- 주방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외산 싱크수전 (한스그로헤 / #72800) 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방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별도의 센서식 싱크 절수기가 설치됩니다.
- 타입별로 주방 쪽 식탁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식탁등이 설치되며, 주방특화 옵션과 조명특화 옵션에 따른 조명 변경 여부가 상이합니다.
- 주방 스마트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이프업 스타일링-조명 특화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일반형/고급형)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방특화 옵션 선택 시 주방 상부장, 주방 장식장에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및 조명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디테일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 배선기구, 전자식 스위치, 환기디퓨저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창호 설치 높이에 따라 84A,B,C,D타입과 103A,B 타입의 상부장 규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선택 항목	약식표기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84A/84B 84C	1안	• 미설치	2-1안	• 냉장고 상부장+키큰장	84A	990,000	99,000	891,000	-
						84B	990,000	99,000	891,000	
						84C	990,000	99,000	891,000	
				2-2안	• 냉장고 상부장+김치냉장고 상부장	84A	560,000	56,000	504,000	
						84B	560,000	56,000	504,000	
						84C	560,000	56,000	504,000	
				3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상부장+키큰장	84A	6,340,000	634,000	5,706,000	
						84B	6,340,000	634,000	5,706,000	
						84C	6,340,000	634,000	5,706,000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84D 103B	1안	• 미설치	2-1안	• 냉장고 상부장+키큰장	84D	1,030,000	103,000	927,000	-
						103B	1,030,000	103,000	927,000	
				2-2안	• 냉장고 상부장+김치냉장고 상부장+키큰장	84D	610,000	61,000	549,000	
						103B	610,000	61,000	549,000	
				3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상부장+키큰장	84D	6,390,000	639,000	5,751,000	
						103B	6,390,000	639,000	5,751,000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103A	1안	• 미설치	2안	• 냉장고 상부장+키큰장	103A	860,000	86,000	774,000	-
				3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상부장	103A	6,150,000	615,000	5,535,000	

- 주방 냉장고장 기본형(1안) 선택 시 냉장고장 및 키큰장은 설치되지 않으며, 도배로 마감됩니다.
- 주방 냉장고장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이 변경되며, 형태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컬럼 패키지 냉장고는 냉동고(RZ34C7865AP), 냉장고(RR40C7995AP), 김치냉장고(RQ34C79(8)45AP)로 구성되며, 각 냉장고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3컬럼 패키지 냉장고의 전면 패널은 글라스 재질의 새틴화이트(84A/B/C/D) 및 새틴베이지(103A/B) 색상으로 설치되며 패널 색상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3컬럼 패키지 냉장고는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주방 냉장고장은 타입별로 크기가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2안과 3안 선택시 콘센트는 2개가 설치되지만 기본형과 2-1안 선택시에는 콘센트는 1개만 설치됩니다.

4. 라이프업 바스(유상)

① 욕실특화

선택 항목	약식표기 (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욕실 특화	전타입	1안	• 벽 : 타일(300*600) • 바닥 : 타일(300*600) • 접합유리 샤워부스 (욕실1) •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 (욕실2) • 국산 수전 • 국산 도기(세면대, 양변기), 전자비데(욕실2) • 욕실 기본 액세서리	2안	• 벽 : 유럽산 타일(600*1,200) • 바닥 : 유럽산 타일(300*600) •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 (욕실1) •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2) • 고급형 수전 • 고급형 도기(세면대, 비데일체형양변기) • 욕실 액세서리류 색상특화	84A	5,740,000	574,000	5,166,000	-
						84B	5,760,000	576,000	5,184,000	
						84C	5,730,000	573,000	5,157,000	
						84D	5,750,000	575,000	5,175,000	
						103A	5,820,000	582,000	5,238,000	
						103B	5,810,000	581,000	5,229,000	
				3안	• 벽 : 유럽산 타일(600*1,200) • 바닥 : 유럽산 타일(300*600) •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 (욕실1) •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2) • 외산 수전 • 외산 도기(세면대, 비데일체형양변기) • 욕실 액세서리류 색상특화	84A	8,260,000	826,000	7,434,000	
						84B	8,220,000	822,000	7,398,000	
						84C	8,250,000	825,000	7,425,000	
						84D	8,270,000	827,000	7,443,000	
						103A	8,340,000	834,000	7,506,000	
						103B	8,350,000	835,000	7,515,000	
스마트 욕실 도어	84A/84C 84D 103A/103B	1안	• 욕실1 : 스마트욕실 도어 공틀	2안	• 욕실1 : 스마트욕실 포켓도어	84A	1,320,000	132,000	1,188,000	-
						84C	1,320,000	132,000	1,188,000	
						84D	1,320,000	132,000	1,188,000	
						103A	1,320,000	132,000	1,188,000	
						103B	1,320,000	132,000	1,188,000	
	84B			2안	• 욕실1 : 스마트욕실 여닫이 도어	84B	250,000	25,000	225,000	-
욕실 복합 환풍기	전타입	1안	• 미설치	2안	• 욕실 복합 환풍기 (2개소/욕실1,2)	84A	1,300,000	130,000	1,170,000	-
						84B	1,300,000	130,000	1,170,000	
						84C	1,300,000	130,000	1,170,000	
						84D	1,300,000	130,000	1,170,000	
						103A	1,300,000	130,000	1,170,000	
						103B	1,300,000	130,000	1,170,000	

• 욕실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단위실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전자비데는 욕실2 1개소에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벽/바닥 타일의 나누기 및 상세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바닥 배수구의 위치, 크기,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코너선반의 형태는 욕실 특화 선택형(2안,3안)과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특화 선택형(2안, 3안) 선택 시 외산·국산 타일 규격이 상이하며, 타일 나누기 및 줄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 선택형(2안, 3안) 선택 시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은 타일 마감으로 변경되어 수납공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1은 본 공사시 세면대 배수관로 설치를 위해 세면대 하부장 뒷판과 지판이 미설치 되며 전면 가림판에 의해 수납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욕실 벽/바닥 타일의 제조사, 규격, 패턴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욕실장, 샤워부스 등 욕실가구의 색상, 규격, 형태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욕실 도어 기본형(1안) 선택 시 스마트욕실(건식 세면대 공간)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며, 공틀로 시공됩니다. 건식 세면대 공간과 욕실 사이에는 여닫이 도어가 기본 설치됩니다.
• 스마트 욕실 도어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별 레이아웃에 따라 건식 세면대 구간에 포켓도어(84A,C,D/103A,B) / 여닫이도어(84B)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도어의 손잡이, 포켓도어 레일 등 하드웨어 스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선택형(2안)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위치는 타입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타입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라이프업 스페이스(무상)

① 알파룸 추가

선택 항목	약식표기(타입)	선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계약금(10%)	잔금(90%)	
알파룸 추가	103A	1-1안	• 팬트리1,2 (여닫이 도어 설치)	2안	-	-	-	-	-	알파룸 추가(무상1-2안) 선택 시 침실1 드레스룸 공간 내경 변경됨
		1-2안	• 알파룸 추가					-	-	

• 알파룸 추가 (무상 1-2안) 선택 시 침실1 드레스룸 공간 내경이 변경됩니다. (드레스룸 축소)
• 알파룸 추가 (무상 1-2안)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의 스펙, 위치, 수량이 변경되며, 본 공사 시 시공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알파룸 추가 (무상 1-2안) 선택 시 팬트리1 수납 특화 선택형(2안) 및 팬트리2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선택이 불가합니다.
• 알파룸 추가 (무상 1-2안) 선택 시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1안) 선택이 불가하며,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2안) 선택 가능합니다.

6. 빌트인가전 옵션(유상)

품목	약식표기 (타입)	설치위치	제조사	모델명	내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 (10%)	잔금 (90%)	
전기쿡탑(인덕션3구)	전타입	주방	디트리쉬	DPI-4320WK	고급형	1,750,000	175,000	1,575,000	-
전기오븐			엘지전자	MZ385EBT1	일반형	450,000	45,000	405,000	-
				MZL94HBT	고급형	1,000,000	100,000	900,000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DW80H73Y1UZ	일반형	1,100,000	110,000	990,000	-
				DW80F75K1UAP	고급형	1,400,000	140,000	1,260,000	
빌트인 정수기			쿠쿠홈시스	CP-AAS100BDS	화이트	1,100,000	110,000	990,000	-
				CP-AAS100BW	실버	1,100,000	110,000	990,000	-
시스템에어컨	84A/84B 84C/84D	거실, 침실1	엘지전자	-	2개소	3,650,000	365,000	3,285,000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4개소	6,650,000	665,000	5,985,000	-
	103A	거실, 주방, 침실1			3개소	5,300,000	530,000	4,770,000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개소	9,800,000	980,000	8,820,000	알파룸 추가(무상1-2안) 미선택 시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6개소	11,800,000	1,180,000	10,620,000	알파룸 추가(무상1-2안) 선택 시
	103B	거실, 주방, 침실1			3개소	5,300,000	530,000	4,770,000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개소	9,800,000	980,000	8,820,000	-
시스템청정환기	전타입	거실, 침실1	삼성전자	-	2개소	1,980,000	198,000	1,782,000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4개소	3,940,000	394,000	3,546,000	-

- 전기쿡탑(인덕션3구) 고급형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인덕션3구 일반형이 설치됩니다. (CIR-M304FB / 쿠쿠전자)
- 기본 제공되는 전기쿡탑(인덕션 3구)은 3.4kW 전력제어 모델이며, 추가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상으로 제공되는 전기쿡탑(고급형)은 7.4kW 전력제어 모델이며, 추가 전기공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옵션 미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선택1) 패널은 에센셜 화이트로 설치되며 패널 색상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식기세척기(선택2) 패널은 새틴화이트(84A/B/C/D) 및 새틴베이지(103A/B) 패널이 설치되며 패널 색상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설치제품(판넬 등)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제품의 단종 또는 제조사의 도산 등은 제외)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감지기 위치, 조명기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실내기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매배관 2개소(거실, 안방)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침실1에는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되며 거실에는 냉매배관이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시 침실1 및 거실에는 냉매배관 및 냉매배관 박스,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작동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는 선택 옵션에 따른 설치 공간의 면적에 따라 공기청정화 능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단위실과 환기 디퓨저의 설치 개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단위실과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설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장비 1대당 무선 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	<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 복도, 침실, 알파룸, 드레스룸 등 <타일,석재>현관, 현관 팬트리 <타일> 발코니, 실외기실 바닥, 발코니 바닥, 발코니 배수구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바닥 방수 및 배수슬리브
벽	초배지, 벽지, 벽체도장, 장식벽(아트월, 타일, 시트지, MDF판 등), 주방벽체타일, 경량칸막이(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걸레받이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벽 도장
천장	초배지, 천장지, 반자돌림, 천장도장,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천장틀, 석고보드, 커튼 박스, 발코니천장도장, 무선AP, 스피커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립형 조명등기구, 비상조명등
욕실	욕실바닥/벽체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 인조강화대리석,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샤워부스 일체, 욕실장, 욕조, 양변기, 세면기, 비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벽체), 조적,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배관·배선, 통신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장,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주방벽체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렌지후드, 쿡탑, 전기오븐 등 주방 가전일체	설비배관(급배수,오수,난방),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배선, 통신배관·배선, 주방배기덕트
일반가구	현관신발장, 드레스룸장, 파우더장, 수납선반, 화장대, 반침가구(시스템)	
창호	목창호(문틀, 상부마감판, 문선, 문짝, 손잡이철물, 경첩 외 하드웨어 일체), 실외기실 도어	목창호가틀, 플라스틱창호내창, 현관방화문, 디지털도어락
기타사항	발코니 수전 일체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해당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103A	103B
마이너스 옵션금액	45,316,000	45,112,000	44,604,000	45,203,000	55,230,000	55,663,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건축법 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 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능 할 시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12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구분		내용
공통	일반사항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복리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분양홍보물 및 분양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구분		내용
		• 일부 세대는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복리시설과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입니다. • 단지명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 각종 홍보물은 예정된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의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은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인 2024년 08월 23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당 사업은 2023년 건축심의를 신청한 사업으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창호, 벽체의 단열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23.02.28)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2022.05.02.)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 지자체, 인·허가관정 등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될 경우, 인접대지, 학교부지 등의 용도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계획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외부에 설치된 환기구(DA), 계단실, 외부엘리베이터 등은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세대 내부 및 외부 공용 부위 등의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각종 인·허가 도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주변현황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으며, 소수점 이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및 단지 주변부 투시형 펜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의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고 해당 사항에 대하여 관계 주무관청에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며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업지 인근 국제업무단지는 지정된 용도지역에 의해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가 규정되며 이에 따라 개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청라국제도시의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서 향후 택지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본 주택 대지경계에 구조물 등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일조 및 조망과 관련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한 것으로, 실제 도로의 위치, 형태 및 조성 현황 등은 향후 계획 및 실제 현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장에 인접한 기반시설(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등)은 개발계획 및 해당 기반시설 공사(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의 지연 및 변경 등에 따라 사업추진 중 일부(당 사업의 실착공 및 준공 지연 등)가 변경•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사업장의 입주시기 및 사용검사 완료가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단지 서측 경계에서 서측 직선거리 약 1km 내 사업지 주변에 서인천발전본부(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신인천빛드림본부(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및 청라자원순환센터(청라 소각장)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 주변에는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가 위치해 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창동 일원에는 청라 AI 데이터센터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사업지 현장 및 위 주변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기재된 주변 시설 현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주체가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시설의 설치·변경·확장·이전 등은 관계기관 또는 해당 시설 소유자의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사업주체와 무관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고지된 주변 시설 및 이로 인한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이를 사유로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행자 전용도로 등 단지의 대지경계선 밖에 위치하는 시설은 당 사업지 부지가 아니므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 당 사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해당없으며, 인근에 "초등학교 예정지(초10)" 및 "중학교 예정지(중6)"가 계획되

구분		내용
		어 있습니다(청라국제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 • (초등학생) 초등학생은 (가칭)청라10초(2031년 9월 개교 목표)에 배치 예정이나, 개교 전 입주시 인근 학교에 임시 배치될 수 있으며, (가칭)청라10초 개교일정은 입주시기 및 학교설립 추진상황, 인근 개발사업 추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고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학교군 내 배치 예정입니다. ※ 초등학생 통학구역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통학구역 지정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중·고등학교 학교군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 가능함. ※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 변경(취소, 세대수 변경, 입주시기조정 등), 인근 개발사업 추이, 관할교육청 학생배치 기준(학급별 학생수 상·하향 조정 등)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다만, 학생 배정 및 학교 개교 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관할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결정 하는 사항으로,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 및 학생수용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동별 현황	•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 쓰레기 이송설비의 악취, 분진, 지하급배기구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202동, 203동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 세대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사만 가능하며, 개별적인 부피에 따른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복도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위치는 층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203동에 설치됩니다. • 각 동 옥상 및 201동 20층, 202동, 203동 19층 피난안전구역에 소화펌프, 제연송풍기, 냉각탑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하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의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202동, 203동 인근의 근린생활시설 지붕층에 냉각탑이 설치되고 추후 근린생활시설용 주방배기설비가 설치되면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2 제4항에 의거 지하층 휀룸(지하1층, 지하3층, 지하5층), 각 동 옥상에는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공과정에서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지역난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조경시설(수공간 등),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실은 소음, 불빛, 분진 등에 의한 생활권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상부 지붕층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됩니다. 태양광의 위치 및 설치형태는 모형에 임의로 반영되어 있으며, 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시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재배치될 수 있으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층 및 상층부 입면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및 측뢰 피뢰침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장재 마감 사양 및 적용 비율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및 상품개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차장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라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와 공공보행통로 사이는 경계담장이 설치되지 않으며 보행 이동이 가능합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 폐기물 보관소, 쓰레기 이송설비의 위치, 마감,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공간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준공 후 조경유지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와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옥외안테나 : 지상1층, 옥상층(201동, 202동, 203동) 중계장치 : 지하층 휀룸(지하1층, 지하3층, 지하5층), 옥상층(201동, 202동, 203동) • 일부 단지 내 도로는 비상상황에서 소방차량 등의 활동을 위해 설치된 도로로써 경사도로 인해 일반차량이 이용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보행자 이용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상부에 일부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외관계획	• 외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외부공간,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및 부착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경관조명, 사인계획 등), 공용부 디자인(E/V홀, 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외부E/V, 외부계단, 썬큰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및 재료, 옹벽의 형태와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사업주체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저층부는 석재 및 금속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외장타일 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조망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경관조명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옥상 및 외벽에 유리 및 금속마감재, 몰딩, 경관조명, 조형물, 태양광 패널 및 사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동별 적용면적은 상이합니다. 또한 동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의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조명이나 유리마감재의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벽 유리 및 금속 마감재, 태양광 패널 및 몰딩이 설치되는 구간이 있으며, 면적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동 위치에 따라 일부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공동주택에 적용된 대형옥상구조물 등 경관조명이 결합된 외관 요소는 사업주체 및 인허가청 협의를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입주예정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BI 및 단지명은 시공사 및 시행사 협의에 의해서 형태 및 위치를 결정하며, 계약자 요구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냉각탑, D.A , 등 그릴 및 루버가 설치되는 부분과 통기관, 중수처리조 배기구의 재질, 색상, 간격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옥상구조물 상부 및 내부면은 도장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옥상 소화수조 변경으로 인하여 옥상구조물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설계변경을 준비 중에 있으며,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자료는 예정된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예정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통해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의 의견,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등에 따라 일부 설계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전 예정된 설계변경사항 및 견본주택과 분양 홍보자료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시설이 인접한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공간만 제공되며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비품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 집기류, 비품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매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및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등)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의 범위와 유지/보수비용 분담, 구체적 운영방법(공동운영 또는 별도 운영)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와 오피스텔 관리단의 구성 후 각 시설에 대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절차 및 합의 과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오피스텔과 공동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구성 등을 통해 입주자들이 결정합니다. 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는 별도 기준에 따라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부담 방식은 추후 결정됩니다. • 부대시설의 구성, 명칭, 배치, 내부 디자인, 창호, 마감재 및 집기류는 분양 이후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과정에서 사용성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대시설 면적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과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의 사양은 각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들은 개인 취향이나 타 단지와의 비교 등을 이유로 사양변경, 추가설치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 및 내부 바닥에 경사(슬로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 실에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24개월)동안 현장 AS센터(가칭)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피트니스클럽에 설치되는 운동기구는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설치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커뮤니티시설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커뮤니티시설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운영 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공용부의 유지 관리를 위한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제습기, 배수펌프, 환기장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용 전기료, 수도료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요금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충당금 등 제반 운영비용을 포함하며, 관리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슬래브 등)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 공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커뮤니티 시설 내 기둥(또는 벽체)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외부공간 일부에 하부 실의 원활한 배수 성능 확보를 위한 통기배관 및 우수입상관등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동 하부 공간 내 개별물품 보관을 위한 창고가 제공되며, 창고의 사이즈와 형태,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868세대로,「주택법」제35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 2, 교육부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및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9조의2에 의거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서해구 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 및 관할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와 서해구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교육부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및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 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됩니다. 또한,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어린이집은 아파트 복리시설로서, 상기 항에서 서술한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비율은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 한하여 적용되며, 오피스텔 등 비주거시설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및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상기 안내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단지의 세대수 기준, 입주민 자녀 우선 입소 비율 등을 포함한 관계 법령, 지자체 조례 및 교육부 지침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함께돌봄센터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868세대로,「주택법」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55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아동복지법」제44조의2,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해당 센터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해당 단지의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지역 돌봄수요 등을 고려할 때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해당 센터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서해구 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구분		내용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됩니다. 또한, 개원 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다함께돌봄센터는 아파트 복리시설로서, 상기 항에서 서술한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비율은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 한하여 적용되며, 오피스텔 등 비주거시설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 및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는 향후 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센터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상기 안내 내용에도 불구하고,「아동복지법」등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변경된 법령·지침 등을 우선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요금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제습을 위한 제습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제습기 가동에 따른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지상1층,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되는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우수조(빗물이용시설) 및 중수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실은 가로등(보안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 피난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외부 E/V실,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실은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택배보관함은 동별 설치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접한 세대의 경우 택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설계된 전기용량은 예상 용량이며, 향후 실시설계 및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공급 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적용됩니다. • 소방시설 및 설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 및 적용되며, 성능위주설계에 따라 적용된 사항은 실시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닥트,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되어있으며 공동주택 1,389대, 근린생활시설 4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전기차 주차구역 포함) • 지하 주차장의 주차면 계획과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경형, 전기차, 승용차 공동이용, 하역공간 주차구획의 위치 및 비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동 직하부와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인접한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5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주차 주요동선차로 및 출입구의 유효높이는 층별로 상이하여 (지하1층 : 2.7m, 지하2층~지하5층 : 2.3m)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으며,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구분		내용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 무인택배 보관함은 각 동별 1개소 지하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주변에는 택배차량등의 하역을 위한 공간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 및 하역 공간은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내 차량동선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오피스텔과 차단기로 분리되어 있으며, 지하1층 202, 203동 동출입구 주변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해당 동과 출입구 및 주차공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공동주택과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재활용쓰레기 보관소는 각 동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실은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이송설비를 통해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며 공동주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 근린생활시설의 다양한 업종의 입점 등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진동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 수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분양대행사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 설계	평면	• 본 사업은 같은 타입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일부 단위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해당 단위세대는 보상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단위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샷시 및 유리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 항목에 차이가 있으니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단위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위치 및 가구/선반의 배치, 주방 싱크대 수전위치, 현관문 도어의 방향은 좌우 단위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하향식피난구,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 및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으며 마감손상 및 훼손된 물품에 대해 보상등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동파 및 각종 하자는 입주민께서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해야 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일부 발코니에만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됩니다. • 대피공간 내 물청소 등으로 인해 하향식 피난구 내부 장치나 아래층 세대로 물이 유입될 경우, 녹 발생으로 인한 작동 불량 및 아래층 인테리어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상층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에 설치되는 각종 수전, 배수배관의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이즈는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설치 등)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세탁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욕실, 세탁실, 팬트리내부, 하향식피난구, 발코니 등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도면 및 견본주택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위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단위세대 간벽 등 단열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타입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및 실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욕실 뒷선반의 깊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실시공 시 단위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냉방기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주방 창호 설치 높이 차이로 인해 주방가구 상부장 규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84A 타입 주방 창문은 103A 타입 드레스룸(또는 알파룸) 창문 및 84C 타입 주방 환기창과 인접·면해 있어 세대 간 시선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해당 동·호수의 배치 및 창문 위치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본 단지 세대의 천장 높이는 2,400mm로 시공됩니다. (욕실, 세탁실, 팬트리 내부,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 등 제외)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붙박이장 등)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각 실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현관, 현관팬트리, 세탁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의 경우 마감 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욕조,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ALC블럭),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ALC블럭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은 전열교환기가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과 설계 도면이 상이한 경우 견본주택이 우선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설계변경을 준비 중에 있으며,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자료는 예정된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예정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통해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의 의견,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등에 따라 일부 설계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전 예정된 설계변경사항 및 견본주택과 분양 홍보자료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내 근린생활시설의 다양한 업종의 입점 등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진동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 수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분양대행사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창호	• 공동주택 타입 및 실에 따라 적용되는 창호 및 하드웨어(손잡이 등)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실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밀폐된 생활 환경 속에서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화분, 빨래 등으로 인해 실내 상대 습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창호 유리면 및 창틀 주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연환기 또는 환기 시스템을 작동하여 결로 현상을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 루버는 필히 닫힘구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동파 및 각종 하자는 입주민께서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해야 합니다. • 실외기실 그릴은 전동루버로 시공되며, 전동루버 작동 오류시 알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실외기실 전동루버의 규격, 조작부 형태 및 설치위치, 손잡이, 마감 등 스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동루버는 루버 개폐를 보조하는 수단이며, 에어컨 가동 시 입주자님이 필히 육안으로 개폐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동루버는 전원공급이 차단되는 경우 수동조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지급되는 매뉴얼 이외의 방법으로 수동 조작할 경우 손잡이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민 부담의 유상 보수 필요) •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은 사양, 규격, 열림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외부 그릴 모양은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창호 프레임과 벽체 내외부 마감과의 깊이는, 마감재(커튼월룩 마감, 석재, BIPV, 페인트 등)에 따라 다릅니다. • 발코니의 외측창은 준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창으로 단열 및 기밀성능이 없는 창이 설치되며,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기적인 환기를 하여야 합니다. (부주의한 관리에 따른 손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103B 타입 중 커튼월룩과 인접한 거실, 주방/식당 창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에 따라 창호 설치 위치를 외측면(콘크리트 구체기준)에 맞추어 시공합니다. 이에 따라 창 하부가 두겁석(창대석, 엔지니어드스톤)으로 마감되며, 해당 창호의 난간 높이는 다른 창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는 외관 및 관련 기준을 고려한 설계, 시공상의 차이로, 해당 창호의 설치 위치 및 난간 높이가 다른 창호와 상이한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 없습니다. • 공동주택 각 세대에는 소방관진입창이 설치되며, 소방차 접안 위치 및 소방성능위주설계 등에 따라 소방관진입창의 설치 위치가 타입별,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피공간 외 거실, 침실 등 세대 내 다른 공간에 소방관진입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진입을 위하여 해당 창호를 개폐하거나 파쇄하여 진입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소방관진입창의 설치 위치 및 형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기준은 타입별로 구성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의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견본주택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성능 향상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마감디테일 및 수납공간의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분양 사업장과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단위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경량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거실 우물천장은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됩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공사 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천정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향상을 위해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조석의 경우, 재료의 접합 연결부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고,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이프업 수납– 현관수납특화 및 드레스룸 특화, 라이프업 키친-주방특화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의 조명선반의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의 디테일 및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이프업 수납– 현관수납특화 및 드레스룸 특화, 라이프업 키친-주방특화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은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으며,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점검구의 디테일 및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세대 내부 가구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안방 포함) 가구는 침실 Size 및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설치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강마루의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조석(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비누턱, 주방상판, 재료분리대 등)은 무늬와 색상, 줄눈나누기 간격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가 발생(단위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시공 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음) • 냉장고장의 규격은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라며, 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가 (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단, 일부 중국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KS기준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제품 생산기준이 KS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타일 나누기(현관, 욕실 등 타일이 시공된 부위)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가구 및 수납가구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 또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도어스토퍼의 형태, 사양, 설치 여부 및 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생략 또는 표시(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조명기기(등기구) 사양 및 위치, 배선기구(스위치 및 콘센트)의 수량 및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 디자인(색상 포함), 프레임사이즈,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현장여건, 풍동실험 및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공간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위치 및 크기, 개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판은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 시 물튀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단위세대 내 목문, ABS문의 힌지 및 손잡이, 손끼임이 발생하는 코너부위에 손끼임방지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미설치 시 해당 없습니다.) • 각 타입형 주방가구에 설치된 조리기구 행거, 선반 등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일반 가구 선반의 배치는 좌우 단위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장식장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시 가구변형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내부에서 전열 가전제품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시스템가구에 설치되는 조명기구(조명선반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의 디테일 및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이프업 키친-주방특화 선택 시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은 본공사 시 제조사, 형태, 색상, 규격, 가림판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수납장 상부에 조명의 유지보수를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 및 스위치의 디테일 및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사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연결된 온수배관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욕실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아트월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트월타일과 바닥재 사이에는 온도 팽창 등으로 인한 바닥재 신축으로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부위는 코킹처리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므로, 유리슬라이딩도어는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현관창고, 팬트리 등에 설치되는 폴딩도어는 기능성 도어가 아니므로 차음, 차폐, 차광 기능이 없습니다. • 세라믹타일은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인조대리석, 세라믹타일 등의 마감재는 가공 및 생산방식에 따라 견본주택과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포켓도어의 프레임, 손잡이, 하드웨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도어의 표면재는 도어의 물성 상 목창호 도어/문선과 패턴, 색상, 엠보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변형)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나누기 및 줄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고 및 실규격은 시공허용 범위 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에는 걸레받이가 미시공 됩니다. • 단위세대 내 거실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되며, 침실 문짝 모서리 상·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실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 패널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시 Staple Tacker가 사용되며, 시공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가구,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실 내 적용되는 마감 표면재(벽지, 시트, LPM 등)는 제품 생산 시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 내 적용되는 석재류(인조석재 포함)는 자재 특성 상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 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적용된 제품과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 내 적용되는 타일은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타일의 재료적 특성 상 각 장 별 색상 및 패턴의 차이(멀티 패턴 타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현관 및 욕실, 주방 등에 시공되는 바닥타일의 경우 사선방향 균열 및 파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분절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와 옹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 및 타일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욕실화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단위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각 실별 코킹 시공부 부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스마트욕실(욕실1)의 건식 세면대 하부장은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마감디테일 및 수납공간의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이프업 바스-욕실 특화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외산·국산 타일 규격이 상이하며, 타일 나누기 및 줄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기계설비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샤워부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구분		내용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는 사용 열원에 맞는 종류로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비데 리모컨 설치위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설치 위치는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시에는 리모컨을 미부착후 기본 제공하여 드리오니 입주자의 사용 편의성 및 선호위치에 부착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지역난방 열원을 사용한 중앙 공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 주방 하부장에는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나 수납 용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배수배관은 층하 배관으로 인접 세대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 내 급수급탕 분배기의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열교환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구 위치나 개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스계량기는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취사용 가스배관이 별도로 주방에 공급되지 않습니다. (전타입 : 발코니 확장 시 인덕션 기본) • 일부 타입은 실외기의 효율을 위해서 추가 설비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84A/B/C 타입은 침니형 후드가 설치되며, 84D, 103A/B 타입은 독립형 후드가 설치됩니다. • 독립형 후드 설치 시 측면 천정에 자동식소화기 설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독립형 후드 설치 시 측면 또는 전면에 타공되어 자동식소화기 조작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독립형 후드 측면에 자동식소화기 설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천장에 세대환기, 주방배기, 화장실 배기용 닥트 및 각종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견본 주택	견본주택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사업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CG등에 적용된 실명칭은 실사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모든 마감자재는 시공 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 홍보물(분양안내, 홈페이지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84A, 103A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홈페이지 CG 및 안내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타입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제공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설치된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타입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공급안내,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조감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허가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 유니트 및 전시모형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의 가구 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된 단위세대 타입은 평면 및 마감재의 유상옵션이 적용된 형태로 건립되어 있으므로, 기본형 마감재 / 가구형태 / 가전 / 평면형태 등에 대해서 반드시 별도 분양안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공동주택

구분		내용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 유니트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허가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 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접근이 제한되거나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공동주택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인허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타입 외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 및 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아트월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외부창호, 유리슬라이딩 도어, 하향식피난구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인허가 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시에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플러스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견본주택 자체의 냉·난방 설비로서 본 공사 시 적용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책상, 책장, 소파 등), 생활 가전류(세탁기, 건조기, 밥솥, TV, 기타 주방 및 침실 소형가전 등), 침장 및 커튼류, 그림 액자, 인테리어 소품 등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현관 도어폰, 단위세대 분전반, 통신 단자함, 등의 제품 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위생도기와 수전, 악세서리류, 바닥배수구, 각종 조절기와 조작버튼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나 높이, 색상,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단위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 단위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 단위세대 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해 거실 또는 침실, 복도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구분		내용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는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색상,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통신 단자함, 공동주택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색상,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타입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 84B, 84C, 84D, 103B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84A, 103A 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 설치된 월패드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타입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통신수구,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통신분전함, 스위치/콘센트류, 통신수구,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통신수구,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단위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통신수구,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 단위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단위세대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견본주택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단위세대 동체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에 적용됩니다. 1층 필로티인 경우 2층 및 최상층 단위세대 설치, 1~2층 필로티인 경우 최상층 단위세대만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공동주택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 단위세대 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 된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단위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분		내용
		•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분전반, 통신단자함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음(타입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의 경우 단위세대 분전반과 통신단자함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설치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전기기기(월패드, 단위세대 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단위세대간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개별세대 내 설치된 월패드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 3년간 무상서비스로 제공된 후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난방,환기,인덕션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단위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과정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시, 안드로이드 7.0 누가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댁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단위세대내의 각 종 홈넷 기기의 제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의 연동은 당 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과 무관하게 발코니 바닥은 실내 바닥과50mm의 단차가 있으며, 견본주택 내 발코니 공간은 디스플레이 품목 설치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시공 시에는 발코니 바닥 부분의 단차(실내 바닥에서-50mm)는 유지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설계변경을 준비 중에 있으며,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자료는 예정된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예정된 설계변

구분		내용
		경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통해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의 의견,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등에 따라 일부 설계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전 예정된 설계변경사항 및 견본주택과 분양 홍보자료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월 및 부대시설 안내

■ 입주예정월 : 2031년 08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쟁,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청라국제업무단지 M5BL내 본 주택과 오피스텔이 같이 조성된 단지로서 단지 내 일부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공급됩니다.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면적 산정과 관계없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입주자가 공동사용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위치/면적 산정 및 공동 사용등을 사유로 계약의 해지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부대복리시설과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별도로 분리할 수 없으며, 공동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므로 계약 및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아래 시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구분 없이 통합 설치되었으며, 해당 시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구분 없이 사용가능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합부대 시설 :** 독서실, 공유오피스, 멀티룸, 맘스라운지, 공유주방, 컬쳐 라운지, 그리너리카페, 런드리라운지,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펫라운지, 시니어클럽(경로당), 운동시설(사우나(1개소),골프클럽(1개소),스크린골프(1개소), 피트니스(1개소), GX(1개소)), 게스트하우스, 경비실, 키즈스테이션,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옥외조경 시설

■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주요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535,315,170,000원	제01222026-101-0002000호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1566-9009)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 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라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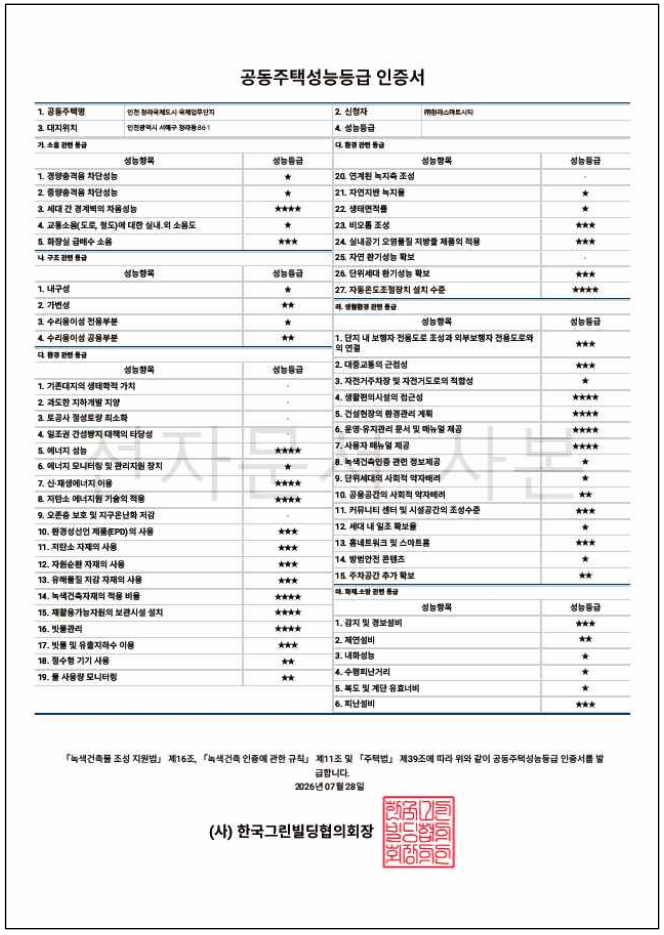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인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2. 신청자	㈜청라스마트시티
3.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6-1	4.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
14. 방범안전 콘텐츠	★
15. 주차공간 추가 확보	★★

마. 화재 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07월 28일

(사) 한국그린빌딩협의회장

전자문서 사본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인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건축주	㈜청라스마트시티
준공일	2029.12.31. (예정)
주소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6-1
층수	지하 5층, 지상 44층
연면적(㎡)	424539.21
건축물용도	공동주택, 업무시설
설계자	㈜나무종인 건축사사무소, ㈜이안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G-SEED-P-2026-07-52-6
인증기관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유효기간	2026-07-28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인증 등급	
인증등급	우수(그린2등급)
인증용도	신축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업무용 건축물)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50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우수, 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토지이용 및 교통 (30%) 30%

에너지 및 환경오염 (80%) 80%

재료 및 자원 (93%) 93%

물순환관리 (82%) 82%

유지관리 (89%) 89%

생태환경 (30%) 30%

실내환경 (75%) 75%

종합등급 ★★★

2026년 07월 28일

(사) 한국그린빌딩협의회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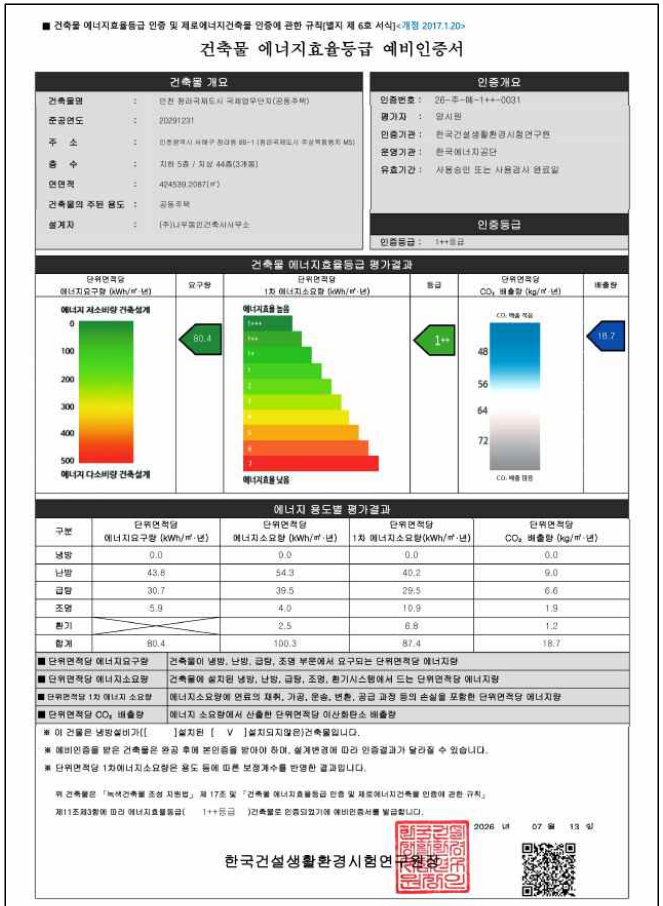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 인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공동주택)	인증번호	: 26-주-예-1++-0031
준공연도	: 20291231	평가자	: 양시원
주 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6-1 (청라국제도시 주상복합용지 M5)	인증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층 수	: 지하 5층 / 지상 44층(3개동)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424539.2087(㎡)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나무종인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	80.4	에너지효율 높음 / 에너지효율 낮음	1++	CO_2 배출 적음 / CO_2 배출 많음	18.7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3.8	54.3	40.2	9.0
급탕	30.7	39.5	29.5	6.6
조명	5.9	4.0	10.9	1.9
환기		2.5	6.8	1.2
합계	80.4	100.3	87.4	18.7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 년 07 월 13 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전자문서 사본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진 성능등급 표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내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능력	내진 Ⅰ 등급

※내진능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내진성능에 해당하는 내진등급(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으로 표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 2)**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램프 및 주차장 차로: 2.7m / 지하2층~지하5층 램프 및 주차장 차로: 2.3m	2.7m

• 주차장 차로의 높이 및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등 계획된 높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진입이 불가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진일기술단	금정엔지니어링(주)	㈜이룸이앤씨
감리금액	13,498,540,000	2,990,523,000	2,836,675,900	462,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주택법」제57조 및「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 공시내용

구분			금 액(원)	구분			금 액(원)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319,836,000,000	공사비	건축	유리공사	8,845,784,267
	기간이자		46,344,854,770			타일공사	6,232,257,013
	필요적 경비		18,578,522,360			돌공사	4,824,973,013
	그 밖의 비용		3,061,919,270			도장공사	2,613,527,253
공사비	토목	토공사	7,262,464,339			도배공사	4,221,851,591
		흙막이공사	-			수장공사	8,041,622,098
		비탈면보호공사	-			주방용가구공사	9,649,946,436
		옹벽공사	-			잡공사	3,015,608,338
		석축공사	-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5,770,849,098
		우·오수공사	1,330,527,792			급탕설비공사	4,529,445,532
		공동구공사	-			오배수설비공사	2,160,080,744
		지하저수조및 급수공사	1,053,334,366			위생기구설비공사	3,455,799,360
		도로포장공사	1,829,475,715			난방설비공사	4,428,791,178
		교통 안전시설물 공사	471,228,661			가스설비공사	1,744,675,337
		정화조시설공사	-			자동제어설비공사	3,086,733,257
		조경공사	1,302,808,532			특수설비공사	2,281,498,423
		부대시설공사	2,106,669,142			공조설비공사	1,362,821,245
	건축	공통가설공사	6,835,378,845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21,954,244,915
		가시설물공사	5,428,094,844			정보통신공사	9,150,394,986
		지정 및 기초공사	14,474,919,450			소방설비공사	11,463,132,225
		철골공사	9,448,905,689			승강기공사	4,730,754,241
		철근콘크리트공사	61,518,407,969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13,708,834,030
		용접공사	1,407,284,000			이윤	16,591,375,740
		조적공사	2,010,405,422	간접비		설계비	3,865,569,381
		미장공사	4,824,973,013			감리비	8,107,570,896
		단열공사	3,015,608,338			일반분양시설경비	3,815,046,466

		방수·방습공사	8,845,784,267		분담금 및 부담금	13,834,044,962
		목공사	6,232,257,013		보상비	-
		가구공사	9,649,946,436		기타사업비성 경비	11,993,623,570
		금속공사	3,618,729,760	그 밖의 비용		71,308,159,878
		지붕 및 홈통공사	2,211,446,169	**합 계**		823,561,800,000
		창호공사	14,072,838,365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주택법」제 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 목		금 액(원)	항목		금 액(원)
택지비 가산항목	택지 기간이자	46,344,854,770	건축비 가산항목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3,726,480,730
	필요적 경비	18,578,522,360		지하주차장층고상향	1,274,348,310
	택지와 관련된 경비	3,341,404,216		설계비 추가비용	557,048,788
	택지비 가산항목 소계	**68,264,781,346**		지반공사비 (암석지반,흙막이,특수공법)	17,426,372,600
건축비 가산항목	구조형식 가산비	1,423,225,956		안전관리비	158,542,290
	공동주택 성능등급	5,562,580,502		법령/조례 등	804,540,000
	사업승인조건 공사	2,010,984,570		분양보증 수수료	3,865,491,278
	법정초과 복리시설	903,629,566		**건축비 가산항목 소계**	**71,622,125,010**
	인텔리전트설비	33,908,880,420			

■ 자금관리 대리사무

① 신한자산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로서의 책임(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하자보수 등)을 지지 않습니다.

②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매도인(사업주체)과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 등과 자금관리업무 모두 매도인(사업주체)에게 포괄승계되며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의 업무는 종결, 면책됨을 확인합니다.

③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매도인(사업주체)과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④ "수분양자"는 분양대금 등을 반드시 지정된 분양수입금계좌(발코니 확장공사비 계좌 및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계좌를 포함함)로 납부해야 하며, 지정 계좌 외의 다른 경로로 입금 및 납부된 금액은 정당한(유효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⑥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등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⑦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⑧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하자보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⑨ 수분양자는 임의로 체결된 각종 개별계약(위탁자 및/또는 분양대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임대확약, 수익보장, 계약해제합의, 환매확약,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에 대해서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인 신한자산신탁㈜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현황**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분양대행사
상호	㈜청라스마트시티	㈜대우건설	신한자산신탁(주)	도담에셋(주)
법인등록번호	120111-1203025	110111-2137895	110111-3543801	120111-0780420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8층 9호 (송도동, 송도국제업무단지 C8-2블럭 업무복합시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 (을지로 4가, 을지트윈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30, 15층 (역삼동, 아세아타워)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청라스마트시티가「주택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주)청라스마트시티, ㈜대우건설)으로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청라스마트시티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및 보존등기 상의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청라스마트시티로 명기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 주소 : **https://www.arkone-prugio.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견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7-1**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